

제10. 26
등14

통계청 유관법인 자료집

2008. 10.



10.072891

통 계 청
통 계 정 책 과

여백

© 2011 by the author

목 차

▣ 통계청 유관법인 소개

□ 통계청 유관법인 현황

□ 한국통계학회	1
○ 일반현황	1
○ 설립목적	1
○ 주요사업	2
○ 정관	3
○ 정관운영세칙	10
○ 산하연구회	18
○ 산하지회	22
○ 학회지	23
○ 입회안내	24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25
□ 한국인구학회	26
○ 일반현황	26
○ 설립목적	26
○ 주요사업	27
○ 정관	28
○ 학회지	34
○ [한국인구학] 원고제출요강, 심사절차 및 원고작성지침	34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39
□ 한국조사연구학회	41
○ 일반현황	41
○ 기관연혁	42
○ 설립목적	43
○ 주요사업	43
○ 연구실적	44
○ 정관	45
○ 조사윤리강령	50

○ 여론조사 보도지침	52
○ 조사연구윤리규정	54
○ 학회지	57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58
○ 입회안내	61
□ 한국통계진흥원	62
○ 일반현황	62
○ 연혁	62
○ 설립목적	64
○ 주요사업	64
○ 주요사업실적	66
○ 정관	69
○ 통계정보지	76
○ 회원의 구분	76
○ 회원에 대한 지원	77
○ 사업소개	77
○ 통계자료 제공비용 산정규정	78
○ 임원진 주소	80
□ 통우회	81
○ 일반현황	81
○ 설립목적	81
○ 주요사업	83
○ 정관	84
○ 산하연구회	91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93
○ 입회안내	94
□ 한국응용통계연구원	95
○ 일반현황	95
○ 설립목적	95
○ 주요사업	96

○ 정관	97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102
□ 한국통계조사연구소	103
○ 일반현황	103
○ 설립목적	103
○ 주요사업	104
○ 정관	105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111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113
○ 일반현황	113
○ 설립목적	113
○ 주요사업	114
○ 정관	115
○ 학술지	122
○ 임원명단	122
○ 입회안내	123
□ 한국행정학회	124
○ 일반현황	124
○ 설립목적	124
○ 주요사업	125
○ 정관	126
○ 임원진 명단	134
□ 한국사회학회	136
○ 일반현황	136
○ 설립목적	136
○ 주요사업	136
○ 정관	137
○ 학회지	145
○ 학술행사	146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147
○ 입학안내	148

□ 한국계량경제학회	149
○ 일반현황	149
○ 설립목적	149
○ 주요사업	150
○ 사업실적	150
○ 정관	151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157
□ 한국응용경제학회	159
○ 일반현황	159
○ 설립목적	159
○ 주요사업	160
○ 정관	161
○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167

▣ 통계청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I. 일반사항	171
1. 법인의 의의	171
2. 법인의 종류	171
3. 사단·재단법인	172
(1) 적용법령	172
(2) 사단법인	172
(3) 재단법인	172
(4)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173
(5) 비영리법인 업무개요	174
II. 법인의 설립	178
1. 근거법령	178
2. 법인설립허가 처리절차 및 신청서식	178

3. 정관작성	179
4. 법인설립 허가시 검토사항	180
5. 법인설립 허가 통지	182
6. 법인설립 등기	183
Ⅲ. 법인의 기관	185
1. 이사	185
2. 감사	186
3. 이사회	187
4. 총회	187
5. 지회	189
Ⅳ. 법인의 관리	190
1. 정관변경 허가	190
2. 기본재산처분 허가	191
3. 보고	192
4. 검사·감독	192
5. 벌칙	193
Ⅴ. 법인 해산	194
1. 허가취소	194
2. 해산	195
3. 잔여재산처분 허가	196
4. 청산	197

VI. 관련 법령	199
1. 민법(제3장 법인)	201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10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14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22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33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236
7. 지정기부금단체관련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240
8. 법인세법상 공익성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추천요령	252
VII. 관련 서식	257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259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261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262
[제4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263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264
[제6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265
VIII. 작성예	267
[작성예1] 발기인명단	269
[작성예2] 재산목록	270
[작성예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71

[작성예4] 임원명단	272
[작성예5] 임원취임승낙서	273
[작성예6]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274
[작성예7] 정관변경사유서	275
[작성예8] 정관변경 신·구조문대비표	276
[작성예9] 연도말보고(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계획서)	277
IX. 부 록	281
1. 사단법인 정관준칙	283
2. 재단법인 정관준칙	286
3. 사단법인 정관례	288
4. 재단법인 정관례	295
5.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국무조정실)	302

여백

© 2011 by the author

통계청 유관법인 현황

2008. 10. 현재

법인	한국통계진흥원	한국통계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설립/인가일자	1963.3.20. /1963. 5. 6.	1971.12.17 / 1987.12.2.	1995.12. 9.	1999.11.13. / 2000. 1. 7.	
회장(대표)	전신애	전중우	김두섭	류계복	
법인성격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소재지(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 103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709호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26호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	
홈페이지	http://www.stat.or.kr	http://www.kss.or.kr	http://society.kisti.re.kr/~pak/	http://www.kasr.org	
전화(fax)(e-mail)	02-3443-7954~6 (02-3443-7957) kosa@nso.go.kr	02-567-2859, 3453-7362 (02-564-7285) office@kss.or.kr	02-2220-0846 (02-2220-2717) duskim@hanyang.ac.kr	02-723-0677 (02-723-0799) kasr99@empal.com	
담당자	정창신	이은주	유정균(간사)	김선웅(총무이사), 박은경(간사)	
임원진	원장 1명 선임이사 4명 당연직이사 11명 감사 1명	회 장 1명 부회장 5명 감 사 2명 이 사 15명	회 장 1명 부회장 2명 이 사 14명 감 사 2명 운영위원 10명	회 장 1명 부회장 2명 이 사 35명 감 사 2명	
현임원선출	2008. 1.	2007.11. 2.	2007. 1. 1.	2008. 1. 1.	
인원현황	회원수	정회원(71개 기관), 준회원(45개 기관)	838명, 138개 기관	304명, 59개 기관	434명, 43개 기관
	상근직원수	16명	2명	-	1
회장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동덕여대 영어영문학과 일본 통계연구소 통계분석기법 전문과정 수료 미국 상무성 경제분석국(BEA) 경제지표과정 수료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역임	1948년생 서울대 수학과 졸업 플로리다주립대(석,박사) 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1952년생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교수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박사) 청주대 바이오정보통계학과 교수	

법인	통우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사회조사연구소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설립/인가일자	1987.4.23. / 1987.12.21.	2007. 10. 8.	1993.11. / 2004.3.23.	1990. 2. 1.
회장(대표)	신현균	김효진	김재오(이사장)	신동엽(이사장)
법인성격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소재지(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71 (서울세관별관 103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6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 1022-44 월산빌딩 4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7-15 제임스빌딩 B101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4 성문빌딩2층
홈페이지	www.statob.or.kr	www.koris.org	http://www.ksrc.or.kr	http://www.kossi.or.kr
전화(fax)(e-mail)	02-3444-4429 (02-3443-7957) -	02-785-6070 (02-785-5150) kasri@chollian.net	062-362-0778 (062-361-2529) ksrc@dreamwiz.com	02-578-2556~9 (02-578-2588) noveljky@hanmail.net
담당자	김응구	오미희	정은진	전광열
임원진	회 장 1명 부회장 2명 이 사 17명 감 사 1명	이사장 1명 이 사 11명 감 사 2명	이사장 1명 이 사 4명 감 사 2명	이사장 1명 회 장 1명 소 장 1명 이 사 4명 감 사 1명
현임원선출	2007.3.29.(3년)	2004.10.30.	2008. 4.13.	2005.1.15.~2009.1.14.
인원현황	회원수 (중앙:496명,지회:334명)	32명	135명	31명
	상근직원수	1명	24명	8명
회장약력	1938년생 연세대학교 졸업 통계청 통계연수원장 통계청 자료관리국장 대한통계협회 부회장	1951년생 동국대 경영대학 졸업	1951년생 아이오와대 경영학 박사 호남대학교 관광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재직 한국공정가격협회 재직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재직

법인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계량 경제학회	한국응용 경제학회	
설립/ 인가일자	1956.10.12 /1961.11.19	1956.10.24	1986. 12	1999.3.	
회장 (대표)	남궁 근	홍두승	조장욱	김성태	
법인성격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소재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 쌍용플래티넘 1609호 한국행정학회 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 번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5 번지 서울중합경제연구소	
홈페이지	www.kapa21.or.kr	http://www.ksa.re.kr	http://www.es.re.kr	http://www.kaae.or.kr	
전 화 (fax) (e-mail)	02-736-4977 (02-738-2190) kapa21@kapa21.or.kr	02-722-8747 (02-722-8746) admin@ksa.re.kr	02-705-8515 (02-704-8599) keconmts@gmail.com	02-515-1014 (02-515-3256) hangryu@cau.ac.kr	
담당자	유한정	조장언	김민성	김기승	
임원진	회 장 1명 부회장 5명 이 사 34명	회 장 1명 부회장 2명 감 사 2명 이 사 37명 편집위원 8명	회 장 1명 부회장 1명 감 사 2명 사무국장 1명 편집위원장 1명	회 장 1명 이 사 11명 감 사 2명	
현임원 선 출	2008. 1. 1.	2007.11.	2008. 2.	2005. 3.	
인 원 현 황	회원수	1,625명, 150개 기관	1,000여명, 120개 기관	550여명 (24개기관)	300여명
	상근 직원수	3명	1명	-	-
회장 약력	1954년생 1976.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7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1989. 피츠버그대 행정학 박사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1950년생 1972. 서울대 사회학과 졸 1980.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 서울대 사회학 교수	1982. 서강대 경제학과 졸 1984. 동대학원 경제학과 졸 1990. 로체스터대학 졸(박사) 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954년생 성균관대 졸업 UCSD대 경제학 박사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여백

© 2011 by the author

한국통계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주 소 : (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709호
- 전 화 : 02-567-2859, 02-3453-7362, Fax : 02-564-7285
e-mail : office@kss.or.kr
- 홈페이지 : www.kss.or.kr
- 창립일 : 1971. 12. 17 (법인등록 : 1987. 12. 2)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예 산 : 68,966만원(2008년)
- 인력(상근) : 2명
- 회원수(2008. 03. 31. 기준)
 - 정 회 원 : 449명
 - 학생회원 : 162명
 - 종신회원 : 227명
 - 단체회원 : 114개
 - 기관회원 : 24개

□ 설립목적

1971년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창립

□ 주요사업

- 연 2회의 춘·추계 학술논문발표회의 개최
- 통계학술지의 간행 - 세 종류의 학술논문집을 연 16회 발간
「Journal of the Korea Statistical Society」, 「응용통계연구」, 「한국통계학회 논문집」
- 외국 통계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 통계인들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소식지 연 6회 발간
- 학회산하 9개 연구회의 워크숍, 논문발표회
- 학회산하 6개 지회의 워크숍, 논문발표회
- 『통계학용어집』, 『회원명부』 등의 간행물 발간

※ 참고

- 한국통계학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임 ('87.12.21)
- 정관 제1조(목적)에 「이 법인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통계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에 의거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아님
- 정관은 법인의 자율적 결의를 표현한 것이므로 정관 제1조(목적)에 명시된 내용은 학회가 공익법에 정해진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이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추후 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정관 등을 개정하여 설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인 통계청은 설립허가증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함

※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상철 연구위원, 02-2110-3510, '08. 9. 2)

사단 법인 한국통계학회정관

1986년 11월 8일 제정
1989년 11월 11일 개정
1990년 5월 26일 개정
1997년 5월 23일 개정
2001년 5월 25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05년 11월 4일 개정
2007년 6월 1일 개정
2008년 6월 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로 칭함).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논문발표회의 개최
2. 학술지와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3. 국내 통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토의
4. 통계학의 이론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 활동 주관
5. 국제 학술 교류
6.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5조(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상설 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2. 상설 위원회
3. 지회
4. 연구회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가. 통계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 나. 기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
 - 다. 정회원은 그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중신회비(일시금)를 납부하여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2.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통계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3. 기관회원

본회의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도서관회원

대학, 연구소 등의 부설 도서관 또는 전문 도서관
5. 학과회원

통계학 또는 관련 학문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단위

제8조(입회와 퇴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임무와 권리)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회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 이하
3. 이 사 15명 이하
4. 감 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선거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3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또한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의 업무를 분담한 분담 이사를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1. 총무이사 : 기획, 재무, 소식지 등과 관련된 업무
2. 사업이사 : 대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
3. 학술이사 : 학술대회, 국제학술교류 등의 학술과 관련된 업무
4. 편집이사 : 학술지 등의 간행물에 대한 업무
5. 홍보이사 : 홍보, 대외 섭외 등의 업무
6. 교육이사 : 통계학 교육과 관련된 업무
7. 정보이사 : 홈페이지 등 학회 정보와 관련된 업무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와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사무국) 제5조 제1호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이사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평의원, 부회장, 감사의 인준
2. 정관과 정관운영세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가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가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총회의 의장은 출석 회원의 표결로 정한다.

제20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과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며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 의 원 회

제22조(평의원의 선출과 임기)

1. 평의원은 본회 정회원들이 소속된 각 학과의 추천으로 (정회원 수가 3명 이상 6명 이하인 학과는 1명 추천, 정회원 수가 7명 이상인 학과는 2명 추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평의원회의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24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 회장, 연구회 회장, 직전 전임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의 추천
2.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정관과 정관운영세칙 변경 등에 대한 동의
3. 중요 업무의 보고 청취와 자문
4. 정관운영세칙에서 정한 각종 사업의 승인
5. 회장선거관리위원의 선출
6. JKSS 운영위원의 인준

제26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의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감사가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7조(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정관과 정관운영세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와 의결
6.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3. 감사가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할 때

제31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와 회비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33조(학술기금) 본회 회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통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의 포상을 위하여 학술기금을 운영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과 정관운영세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정관의 시행과 구 정관의 폐기) 이 개정된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단 법인 한국통계학회 정관 운영세칙

1992년 5월 15일 제정
1994년 11월 4일 개정
1995년 5월 26일 개정
1996년 10월 21일 개정
1997년 5월 23일 개정
1998년 5월 29일 개정
2001년 5월 25일 개정
2002년 1월 11일 개정
2003년 1월 24일 개정
2003년 5월 23일 개정
2005년 11월 4일 개정
2007년 6월 1일 개정
2008년 6월 1일 개정

제 1 장 사 업

제1조(학술논문발표회) 정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1. 춘계학술논문발표회
2.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제2조(학술지) 정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학술지를 발행한다.

1.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이하 'JKSS'로 칭함): 영문에 의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며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발행한다.
2. 응용통계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국문 또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연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한다.
3. 한국통계학회논문집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국문 또는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연 6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발행한다.

제3조(소식지) 한국통계학회소식지는 연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하며 학회 업무에 관한 공지 사항, 회원 동정 등을 수록한다.

제4조(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정관운영세칙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출판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원고가 게재 확정되어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포상) 통계학의 학문발전과 본회 회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상 규정에 따라 다음의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1.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학술상
2.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
3. 학술진흥상
4. 포스터논문상
5. 공로상

제 2 장 회 장 선 거

제6조(회장 선출의 절차)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1. 평의원으로 구성된 회장후보 추천단에서 각 평의원이 회장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상위득표순 3위까지의 득표자 명단을 정관운영세칙 제8조에 규정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항의 상위득표자 중에서 후보를 수락한 자를 회장 입후보자로 정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정회원들의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명 이 상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7조(회장 선거권)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한 자가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장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1. 선관위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총무이사 제외)은 정관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선출한다.
2. 선관위의 위원장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평의원회가 선임

한다.

3. 선관위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4.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선관위의 기능)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
2. 투개표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관위의 해산) 선관위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 3 장 상설 위원회

제12조(편집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2조에 규정된 각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지 별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 JKSS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칙은 정관운영세칙 제14조에 규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주간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고,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
 - 나.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다.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항

제13조(JKSS 운영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2조에 규정된 JKSS의 국제화를 위하여 JKSS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JKSS 운영위원 (이하 '위원'이라 칭함)과 본회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2. 위원 수의 수는 9인으로 하되, 2009년까지는 3인, 2011년 까지는 6인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 최초 3인의 위원은 그 임기를 2013년까지로 한다.
4.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 회장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후임자를 정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한다.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편집위원장의 선출
 - 나. 편집위원 변경 안의 심의와 의결
 - 다. JKSS의 편집 방향
 - 라. JKSS 국제화를 위한 재정 확보

제14조(JKSS 편집위원회) JKSS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JKSS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임기 동안 편집위원 중 1/2 이하를 변경 추천할 수 있고 JKSS 운영위원회는 변경 추천 안을 심의 의결한다. 후임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2008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JKSS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5.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
 - 나.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다.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항

제15조(학술기금 운영위원회) 정관 제33조에 규정된 학술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술기금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본회의 부회장 중에서 1명을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총무 이사가 겸임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① 학술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 ② 정관운영세칙 제5조에 규정된 각종 포상제도의 상급에 대한 심의와 의결

제16조(학술대회 운영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1조에 규정된 학술논문발표회와 본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학술대회 (이하 ‘학술대회’로 총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대회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연구한다.
 - ① 학술대회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과 개선 방안
 -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관한 심사
 - ③ 초청강좌와 초청강연의 주제 및 연사 섭외
 - ④ 발표논문의 안배와 좌장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학술대회 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포상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5조에 규정된 각종 포상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포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위원회는 정관운영세칙 제4조에 규정된 각종 포상 제도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한다.

제18조(상설위원회의 소집) 각 상설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회 비

제19조(입회비) 정관 제7조에 의거한 입회비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학생회원, 도서관회원, 학과회원 : 20,000원
2. 기관회원: 없음

제20조(연회비)

1. 정관 제9조에 의거한 연회비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50,000원
 - ② 학생회원 25,000원
 - ③ 도서관회원 150,000원
 - ④ 학과회원 120,000원
2.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정회원은 다음의 종신회비 (일시금)로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 ① 700,000원 (65세 미만 정회원의 경우)
 - ② 100,000원 (65세 이상 정회원의 경우)
3.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지 회

제21조(지회의 종류) 정관 제5조 제3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지회를 둔다.

1. 강원·경기·인천지회
2. 대구·경북지회
3. 부산·경남지회
4. 충청지회
5. 호남·제주지회
6. 북미주지회

제22조(지회 회원의 자격) 지회 회원은 본회의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서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지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23조(지회 임원) 지회는 회장 1명과 총무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지회 회장은 지회가 추천하고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24조(지회의 의무)

1. 지회는 본회의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지회 회원 명부와 임원 명부

- ②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회계
- ③ 차기연도 사업계획

제25조(본회의 재정 보조) 본회는 지회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6 장 연 구 회

제26조(연구회의 종류) 정관 제5조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연구회를 둔다.

1. 공업및기업정보통계연구회
2. 생물통계연구회
3. 조사통계연구회
4. 통계계산연구회
5. 통계교육상담연구회
6. 국가통계연구회
7. 베이지안통계연구회
8. 분류연구회
9. 스포츠통계연구회

제27조(연구회의 설치) 연구회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연구회 회원의 자격) 연구회 회원은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정관운영세칙 제20조에 규정된 본회의 연회비 이외에 추가로 5,000원의 연구회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29조(연구회 임원)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는 회장 1명과 총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가 추천하고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총무간사는 연구회 회장이 위촉한다. 연구회 회장과 총무간사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0조(연구회의 의무)

1. 연구회는 본회의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구회의 사업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연구회 회원 명부와 임원 명부

- ②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회계
- ③ 차기연도 사업계획

제31조(본회의 재정 보조) 본회는 연구회 사업의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다.

제32조(연구회의 해산) 연구회 회비납부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연구회는 자동 해산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개정된 정관운영세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운영 세칙은 폐기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운영세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하연구회 소개

○ 국가통계연구회(구 공식통계연구회)

국가통계가 국가운영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정보로서 국가비전의 제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 자료라고 하는데 그 누구나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정책의 기획, 집행뿐만 아니라 평가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통계만이 객관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통계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통계학회는 1995년 11월 25일 공식통계연구회를 창립하여, 통계작성 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가통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가통계의 이용확대를 통하여 국가통계의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여기에서 공식통계연구회라는 명칭은 다음에 유래한다. 세계통계기구 (ISI :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산하에는 IAO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fficial Statistics)에 대응되는 한국통계학회의 기구이다. 국가통계는 Governmental Statistics, National Statistics, Official Statistics로 불리우는 영어용어의 우리말이다.

<임원>

회 장 : 최중후,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041-860-1556, jhchoi@korea.ac.kr
부회장 : 이윤동,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02-2049-6086, widylee@gmail.com
총 무 : 김기환,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041-860-1557, korpen@korea.ac.kr

○ 공업 및 기업정보통계연구회

산업 현장에서 응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도출되는 통계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feedback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회는 1991년 발족되어,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및 경영 그리고 R&D에 응용되는 통계적 방법론의 소개와 보급 그리고 이의 응용을 위해 매년 1~2회의 Workshop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회의 Workshop을 개최하였다. 또한 계량 방법론의 활용이 사회 전 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는

만큼 금융·서비스업 부분을 포함한 사무 부문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공업통계 Workshop은 다음과 같은 기준 하에서 주제를 선정해 왔으며, 역대 Workshop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실무 활용 Workshop

- 실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존 통계방법론의 정리/연구
- 실무에 저변 확대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통계 방법론의 연구 및 구현 방법의 소개
- 교육 및 활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 방법론의 정리 및 요약

나. 이론 전개 Workshop

- 핵심 영역별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
- 기존 방법론의 현장 적용 사례 소개
- 공업 통계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소개

<임원>

회 장 : 김영일, 중앙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031-670-3057, yik01@cau.ac.kr

총 무 : 이재현, 중앙대학교 통계학과, 02-820-5501, jaeheon@cau.ac.kr

○ 베이저안통계연구회

<임원>

회 장 : 김병휘, 한양대학교 수학과, 02-2290-0904, bkim@hanyang.ac.kr

간 사 : 정윤식,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051-510-2288, yschung@hyowon.pusan.ac.kr

<홈페이지> <http://stat.pusan.ac.kr/~yschung/Bayesian/index.htm>

○ 분류연구회

분류연구회는 군집, 패턴인식, 분류, 다차원분석, 트리구조, 주성분, 인자분석 등의 다변량분석 방법 등을 비롯하여 Data Analysis, Datamining 분야 등의 이론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응용 분야를 접목시켜 통계학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회입니다. 분류연구회는 1993년 한국분류학회로 시작되어 활동해오다가 2003년 한국통계학회 분류연구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분류연구회에서는 통계학을 주축으로 하여 경영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지리학, 의학, 교육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과 사회

조사연구기관, 마케팅 컨설팅 분야 등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류연구회는 세계분류학회 (IFC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http://www.classification-society.org>)와 연계하여 분류분야의 학문의 교류를 이끌고 있으며, 실증적인 자료분석에 중점을 둔 응용통계기법들의 개발 및 사례적용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또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회 장 : 이태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02-3668-4691, trlee@knou.ac.kr

간 사 : 이균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02-705-8709, ghlee@sogang.ac.kr

○ 생물통계연구회

<임원>

회 장 : 이재원,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02-3290-2237, jael@korea.ac.kr

간 사 : 김 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02-740-8874, hokim@snu.ac.kr

○ 조사통계연구회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한국통계학회 산하의 연구회로 조사통계와 관련된 분야에 관계하는 학자, 실무자, 기관 및 각종 단체들이 모여 1988년 발족한 공동 연구 단체이다.

본 연구회는 통계조사 이론의 연구 및 교육, 조사기법의 개발, 통계연구용역의 수행, 각종 자료들의 교환 및 통계조사 수행기관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통계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워크샵, 세미나, 심포지움, 연구논문집의 발간, 학술 발표회, 관련 전문서적의 발간, 학술용역의 수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통계학자, 통계생산관련 실무자, 관련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조사이론을 실무에 효율적이면서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돕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통계조사 결과 생산되는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임원>

회 장 : 김수택, 경상대 정보통계학과, 055-751-6008, kstioa0@nongae.gsnu.ac.kr

부회장 : 홍기학, 동신대 통계학과, 061-330-3353, khhong@dongshinu.ac.kr

총 무 : 박진우, 수원대 통계정보학과, 031-220-2123, jwpark@suwon.ac.kr
변중석, 한신대 정보통계학과, 031-379-0616, jsbyun@hanshin.ac.kr
김규성,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02-2210-2505, kskim@uos.ac.kr

<홈페이지> http://earth.uos.ac.kr/~stat_survey/member.html

○ 통계계산연구회

<임원>

회 장 : 박헌진,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032-860-7647, hjpark@inha.ac.kr
총 무 : 이윤동,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02-2049-6086, widylee@gmail.com

○ 통계교육상담연구회

<임원>

회 장 : 김삼용, 중앙대학교 수학과통계학부, 02-820-5225, sahm@cau.ac.kr
총 무 : 성병찬, 중앙대학교 수학과통계학부, 02-820-5216, bcseong@cau.ac.kr

<홈페이지> <http://stat.anyang.ac.kr/sec>

○ 스포츠통계연구회

스포츠통계연구회(Statistics in Sports)는 스포츠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다양한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7년 10월에 한국 통계학회 산하의 연구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회는 통계학 분야와 체육학 분야 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현장 데이터의 공유와 지원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통하여 다양한 통계적 방법의 연구와 재미있는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연구회는 스포츠분야에서 양 학자간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원>

회 장 : 홍중선,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02-760-0467, cshong@skku.ac.kr
총 무 : 조정환, 서울여자대학교 체육학과, 02-970-5686, jhcho@swu.ac.kr
조영석,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051-510-2183, choys@pusan.ac.kr

□ 통계학회 지회

○ 강원·경기·인천지회

1989년 7월 1일 인하대학교에서 경기, 강원 지회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으로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 지회는 강원, 경기, 인천 지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매년 2회에 걸친 학술 발표회와 지역내의 통계교육과 통계보급에 관한 연구 토의 및 건의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임원>

회 장 : 주상열, 강원대학교 통계학과, 033-250-8433, syjoo@kangwon.ac.kr

총 무 : 강상길, 상지대학교 컴퓨터데이터정보학과, 033-730-0427,
sangkg@sangil.ac.kr

○ 대구·경북지회

<임원>

회 장 : 최재성,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053-580-5214, jschoi@kmu.ac.kr

○ 부산·경남지회

<임원>

회 장 : 손건태,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051-510-2215, ktsohn@pusan.ac.kr

부회장 : 김수택, 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055-751-6008, kstioa@nongae.gsnu.ac.kr

간 사 : 조영석, 부산대학교 통계학과, 051-510-2183, choys@pusan.ac.kr

<홈페이지> <http://www.stat.pufs.ac.kr/~stat/>

○ 충청지회

충청지회는 9개교의 학과회원(고려대학교, 공군사관학교,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서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과 6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춘계, 추계 연2회 논문발표회를 가지고 있다.

<임원>

회 장 : 박효일, 청주대학교 바이오정보통계학과, 043-229-8203, hipark@chongju.ac.kr

총 무 : 진서훈, 고려대학교 정보통계학과, 041-860-1555, seohoon@korea.ac.kr

○ 호남·제주지회

<임원>

회 장 : 조성의, 목포대학교 전산통계학과, 061-450-2773, chosug@mkpo.ac.kr

부회장 : 조완현,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062-530-3443, whcho@chonnam.ac.kr

총 무 : 장인홍, 조선대학교 컴퓨터통계학과, 062-230-6821, ihchang@chosun.ac.kr

○ 북미주지회

<임원>

회 장 : 정신호, Duke University, jung0005@surgerytrials.duke.edu

총 무 : 장원철, University of Georgia, jang@uge.edu

□ 학회지

○ JKSS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1973년 통계학연구로 창간
- 1996년 영문명칭(JKSS)으로 변경
- 년 4회 발간(3, 6, 9, 12월), 통권(2008년) 37권
- 영문지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2002. 8. 20)
- Elsevier B.V. 출판, SCIE 등재지 선정(2008년)

○ 응용통계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 1987년 창간
- 년 6회 발간(2, 4, 6, 8, 10, 12월), 통권(2008년) 21권
- 국영문 혼용지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02. 12. 31)

○ 한국통계학회논문집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 1994년 창간
- 년 6회 발간 (1, 3, 5, 7, 9, 11월), 통권 (2008년) 15권
- 국영문 혼용지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02. 12 .31)

□ 입회안내

○ 본 학회에서는 세 종류의 학술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응용통계연구」, 「한국통계학회논문집」)연 16회, 학회소식지 연 6회, 학술논문발표회 proceedings, 「통계용어집」 등을 발간하여 온라인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에게 위의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통계학 등에 관한 정보를 회원단체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춘·추계학술논문발표회 개최를 통한 통계인의 모임과 통계의 이론개발과 보급·응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회 산하 9개 연구회와 6개 지회를 통하여 워크숍과 발표회 등을 가져서 관심있는 분들 간의 정보 교류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인들 간의 상호연락 및 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시면 홈페이지의 입회절차를 따라 주시고, 연회비 및 입회비를 지로 또는 학회 계좌로 납부하여 주십시오. 회비납부 확인까지 되어야 회원이 되시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용도 가능하십니다.

○ 회비납부안내

- 입 회 비 : 2만원정 (₩ 20,000)
- 정회원회비 : 년 5만원정 (₩ 50,000) ... 입회시 (₩ 70,000)
- 학 생 회 비 : 년 2만5천원정 (₩ 25,000) ... 입회시 (₩ 45,000)
- 종 신 회 비 : 70만원정 (₩ 700,000): 65세 미만의 경우
10만원정 (₩ 100,000): 65세 이상의 경우...10년이상 정회원을
유지하며 평의원회의의 승인을 받은자
- 학 과 회 비 : 년 12만원정 (₩ 120,000) ... 입회시 (₩ 140,000)
- 도서관회비 : 년 15만원정 (₩ 150,000) ... 입회시 (₩ 170,000)
- 기 관 회 비 :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함.

2008년 한국통계학회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주소	소속	e-mail	연락처	
회장	전종우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 통계학과	jwjeon@plaza.snu.ac.kr	02-880-6574	
부회장	강관중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840	동아대 수학과	kjkang@donga.ac.kr	051-200-7212	
	한상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smhan@uos.ac.kr	02-2210-2381	
	이석훈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 정보통계학전공	shlee@stat.cnu.ac.kr	042-821-5438	
	배종성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정보통계학전공	jsbae@chonnam.ac.kr	062-530-3442	
	최중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리 208	고려대(세종)정보통계학과	jhchoi@korea.ac.kr	041-860-1556	
총무이사	김영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숙명여대 통계학전공	ywkim@sookmyung.ac.kr	02-710-9434	
학술이사	김태운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 통계학과	tykim@kmu.ac.kr	053-580-5533	
사업이사	한상태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 29-1	호서대 정보통계학과	sthan@hoseo.edu	041-540-5901	
편집이사	출판	윤석훈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 통계정보학과	syun@suwon.ac.kr	031-220-2125
	JKSS	박병욱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 통계학과	bupark@stats.snu.ac.kr	02-880-6576
	응연	황선영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	숙명여대 통계학전공	shwang@sookmyung.ac.kr	02-710-9622
	논문집	이승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번지	한신대 정보통계학과	seung@hanshin.ac.kr	031-379-0614
홍보이사	이선호	서울 광진구 군자동	세종대 응용수학전공	leesh@sejong.ac.kr	02-3408-3205	
교육이사	백호유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	원광대수학정보통계학부	hybaek@wonkwang.ac.kr	063-850-6400	
정보이사	변종석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411	한신대 정보통계학과	jsbyun@hanshin.ac.kr	031-379-0616	
평이사	이우선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성신여대 통계학과	wslee@cc.sungshin.ac.kr	02-920-7184	
	정규남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jungk@nso.go.kr	042-481-2030	
	김규곤	부산 부산진구 가야3동	동의대 데이터정보학과	kkkim@deu.ac.kr	051-890-1481	
	이기원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	한림대 통계학과	kwlee@hallym.ac.kr	033-240-1446	
	김주환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경주)정보통계학과	jhk@dongguk.ac.kr	054-770-2244	
감사	이승수	강원도 춘천시 효지2동 192-1	강원대 정보통계학전공	sslee@kangwon.ac.kr	033-250-8435	
	나중화	충북 청주시 개신동 산 48	충북대 정보통계학과	cherin@chungbuk.ac.kr	043-261-2232	

한국인구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26호 (우) 133-791
- 전화 : 02-2220-0846, Fax : 02-2220-2717
e-mail : duskim@hanyang.ac.kr
- 홈페이지 : society.kisti.re.kr/~pak
- 창립일 : 1976 (법인등록 : 1995.12. 9.)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주요기능 : 인구학 및 인구통계 연구, 인구학술지의 간행
- 예 산 : 3,800만원(2008년)
- 인력(상근) : 없음(총무이사 및 조교가 업무수행)
- 회원수
 - 정 회 원 : 304명
 - 기관회원 : 59개

□ 설립목적

1976년 인구학 및 인구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사업

- 연 2회의 춘·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및 국제 세미나 개최
- 학술지의 간행 - 학술논문집 「한국인구학」을 연 2회 발간
-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 회원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소식지 연 4회 발간

※ 참고

- 한국인구학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임 ('87.12.21)
- 정관 제1조(목적)에 「이 법인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구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에 의거 허가받은 공익법인은 아님
- 정관은 법인의 자율적 결의를 표현한 것이므로 정관 제1조(목적)에 명시된 내용은 학회가 공익법에 정해진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며, 이로 인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추후 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정관 등을 개정하여 설립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인 통계청은 설립허가증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함

※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상철 연구위원, 02-2110-3510, '08. 9. 2)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구학 및 인구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 또는 인구관련 기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인구연구 발표회의 개최
2. 인구학술지의 간행
3. 국내 인구통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4. 인구학의 이론 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5. 위의 목적에 일치하는 기타 사업

제5조 (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상설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2. 각종 위원회
3. 지 회

제6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개인회원 : 인구와 관련된 연구, 교육 및 정책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인구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자 및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은 누구나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기관회원 : 인구학과 인구통계에 관련된 학교와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3. 원로회원 : 한국에서 인구학 및 인구연구에 기여하였거나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신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의 결의로 원로회원으로 추대하여 종신회원으로 예우한다.

제8조 (입회와 퇴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임무와 권리) 각급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하고 학회지, 학보를 받을 수 있다.
2. 개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각종 인구학회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제명) 3년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4. 감사 2명
5. 상임자문위원 약간 명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 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6조 (기구의 구성)

1. 제5조제1호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제5조제2호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주요의결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에 따른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이사회에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나.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총회는 재적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정관 및 내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
5.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22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다음에 따른다.

1.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다음에 해당될 때에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 나.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일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 할 수 있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25조 (운영위원회 설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한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선출 및 임기)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국내, 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4.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6. 찬조금 및 기타 수입

제3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2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학회지

○ 한국인구학(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 1977년 한국인구학회지로 창간
- 1996년 한국인구학으로 변경
- 년 3회 발간(4, 8, 12월), 통권 (2008년) 31권
- 국문 및 영문논문 게재
-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선정(2001년 하반기)

□ 《한국인구학》 원고제출요강, 심사절차 및 원고작성 지침

○ 원고제출요강

- 본 학회지에 제출할 논문은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 다른 학회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 논문은 다음의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논문제목, 저자명, 국문초록, 핵심단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저자
영문이름, 영문초록, 영문핵심단어, 저자소속 및 연락처
- 논문은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한국인구학》에 게재하기를 희망하는 논문이나 글은 《한국인구학》의 편집
위원장에게 다음의 주소로 우송 또는 전송해야 한다.

※ 주소 : (우)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정성호 교수 연구실

Tel : 033)250-6867, Fax : 033)244-6896, e-mail : shc@kangwon.ac.kr

○ 원고 심사기준 및 절차

- 논문 선정을 포함한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모든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출된 논문주제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명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한다.
- 논문심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논문심사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이 수정을 요청한 논문에 대하여 논문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또는 “수정보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
원회는 논문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고작성 지침

- 논문은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총30매(인쇄면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글씨체는 모두 바탕체로 통일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서 편집진에서 글씨체를 수정하기로 한다.
- 논문의 제1쪽에는 논문제목, 제출일, 교신저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표시한다(글씨크기 12).
- 논문의 제2쪽은 제목(글씨크기 15), 저자명(글씨크기 10), 국문초록(글씨크기 8), 핵심단어(글씨크기 9)를 포함한다.
- 국문초록은 800자 내외로 한다.
- 감사의 글은 제목 옆에 *표 각주(글씨크기 8)로 표기한다. 저자의 소속은 저자의 이름 옆에 *표 각주(글씨크기 8)로 표기한다.(논문의 제2쪽)
- 논문의 제3쪽부터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작성지침은 아래를 참조한다.
- 논문의 끝 쪽에는 영문제목(글씨크기 15), 저자영문이름(글씨크기 10), 영문초록(글씨크기 8), 영문핵심단어(글씨크기 9) 등을 실는다.
- 영문초록은 200단어 내외로 한다.
- 국문 및 영문초록 내용은 목적(purpose), 방법(method),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순으로 단락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기술한다.

▶ 본문작성요령

- 논문은 A4용지에 맞추고, 용지는 폭 170mm, 길이 240mm로 설정한다.
- 여백은 용지 상하좌우 끝에서 25mm를 둔다. 줄 간격은 150%로 설정한다. 문단을 시작할 때는 2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 본문 글씨크기는 10으로 한다. 글씨체와 글씨크기는 게재논문에 한정해 편집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한다.
- 자료(통계자료, 행정자료 포함)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본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방법 및 절차,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 본문은 내용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I II III,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 국문원고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한다. 기타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에 괄호하여 부기한다.
- 저술 인용시에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년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을 ① 본문에 언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년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②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년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① 이홍탁(1987: 112), Cherlin(1999) ② (이홍탁, 1987: 112), (Cherlin, 1999)
 - 2) 국문 원고에서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철린(Cherlin, 1999).
 -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국문저자들은 방점(·)으로 구분한다. 영문저자들은 and를 이용해 구분한다: ① 권태환·김두섭(1990: 69), (권태환·김두섭, 1990:69) ② David and Wagner(1999: 2-14), (David and Wagner, 1999: 2-14)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①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②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① 권태환·김태현·최진호(1995), (권태환·김태현·최진호, 1995) ② 권태환 외(1995), (권태환 외, 1995)
 - 5) 개인이 아닌 단체나 기관의 저술일 때는 최소한의 저자표기를 사용한다: 통계청(1997)
 - 6)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이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세미콜론 ‘;’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국문과 영문 문헌 혼합 시에는 국문을 먼저 기재한다: (구성열·강병규, 1998; 홍문식, 1998; 박경애, 1999)
 - 7) 출판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해야 하며,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Park, 1998, 미간행)
- 본문과 관련은 있지만 본문에 포함할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언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재인용시 원래의 저서를 밝히고자 할 경우는 그 내용을 언급한 본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각주는 최대 8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도표작성요령

- 도표는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도표의 크기(도표 제목과 주를 포함하여)는 출판규격 내의 크기(가로 170mm*세로 240mm) 이하로 한다.
- 도표가 주어진 크기를 초과할 경우, 분할하여 제시한다.
- 도표 제목은 상단 중앙에 위치한다.
- 도표 제목, 내용, 주는 바탕체(글씨크기 9)로 통일한다. 게재확정된 논문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수정한다.

- 도표는 하나씩 별지에 작성하되, 본문 속에 들어갈 자리를 지정하여 “<표 1> 여기에”, “<그림1> 여기에”와 같이 표시한다.
- 주는 도표의 아랫부분에 ‘주: ’라고 쓴 다음 차례로 제시하며 도표의 하단 좌측에 적는다.
- 출처는 ‘자료: ’라고 쓴 다음 위의 항목 26의 요강에 따라 제시한다.
- 그림의 범례도 하단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그림 속에 넣어도 된다.
- 통계적 유의도는 반드시 도표 하단에 ‘주: ’라고 쓴 다음, 아래와 같이 세단계로 표기한다: * $p < 0.10$, ** $p < 0.05$, *** $p < 0.01$
- 표 속의 칸과 행에는 적절한 범주명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한다.
- 도표에서의 소수점은 주어진 도표 내에서 통일시켜야 한다.
- 통계모형의 계수는 반드시 소수 셋째자리까지 제시한다.
- 표의 모든 선은 단선(single line)으로 ?글이나 MS 워드의 기본 서식을 사용한다.
- 그림은 색을 넣어 그려도 좋으나, 인쇄 시에는 흑백으로만 표현됨에 유의한다.
-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 · 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에서 만든 도표를 신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이들 도표의 파일원본을 본문파일과 함께 편집장에게 제출한다.

▶ 참고문헌 작성요령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 한국어문헌은 저자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 참고문헌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같은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2) 출판예정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출판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3) 같은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로 나열한다: 김태현 (1999a), 김태현 (1999b)

-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 5) 저자(영문) 이름을 기재할 때 Given Name은 약자를 사용한다.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한국어문헌>

김두섭 (1986) “한국부인의 경제활동과 출산력” 인곡 황성모박사 환갑기념
《사회구조와 사회사상》 심설당, 759-776.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번역서>

보울즈·진티스(S. Bowles. and H. Gintis) (1986) 이규환 (역)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사계절.

<외래어문헌>

Gauthier, A. and J. Hatzius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295-306.

Jun, Kwang-Hee (2004) “Chapter 3: Fertility” pp. 65-89 in The Population
of Korea, edited by Doo-Sub Kim and Cheong-Seok Kim, Daejeon, Korea: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200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기 타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학회에서 발간된 최근 《한국인구학》의
관례에 따른다.
- 논문 제출과 작성요령에 관한 질의는 편집위원장에게 한다.

2008년 한국인구학회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위	성명	주소	주택, 이동전화	사무실	e-mail
회장	김두섭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011-9291-7029	02-2220-0846	duskim@hanyang.ac.kr
부회장	정경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1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정책팀	011-9097-0884	02-380-8218	khlc@kihasa.re.kr
	정성호	강원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	033-250-6867	shc@kangwon.ac.kr
이사	구성열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신상대 414호	017-202-2474	02-2123-2474 393-1562	sykoo@yonsei.ac.kr
	권태환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 107-10 예예동산	016-294-5056	-	kth@snu.ac.kr
	김미숙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사회학부 사회학전공	019-209-8580	-	miskim@chongju.ac.kr
	김민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신원 아파트 308동 304호	011-796-1803	-	kimmk2007@hanmail.net
	김원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서창동 208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011-9080-2151	041-860-1512 fax:865-9079	kwn@korea.ac.kr
	김태현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학과	011-9145-9181	043-230-3204 fax:232-7175	thkim@cc.knue.ac.kr
	김한곤	경북 경산시 대동면 214-1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011-9593-2898	053-810-2255	hgkim@ynucc.yeungnam.ac.kr
	박상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110-1201	019-224-8367	-	lspark@ccs.sogang.ac.kr
	은기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56-1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620호	011-9704-7562	-	eunkisoo@snu.ac.kr
	이여봉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동 산 6-2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경천관 402-1	016-756-7451	031-280-3818	yblee@kangnam.ac.kr
	전광희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019-9764-6339	042-821-6339	jkh96@cnu.ac.kr
	민경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010-4450-2182	043-261-2182	kyonghee@chungbuk.ac.kr
	최순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011-9766-2741	051-240-2741	schoi@donga.ac.kr
	최진호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산5, 이주대학교 사회과학부	011-9989-5220	031-219-2778	jhchoi@ajou.ac.kr

직위	성명	주소	주택, 이동전화	사무실	e-mail
감사	조영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310호	010-7135-4610	02-740-8880	youngtae@snu.ac.kr
	박경애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통계청 인구동향과	010-4820-8344	042-481-2250	kaypark@nso.go.kr
총무	박성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한국노동연구원	016-734-3152	02-785-1806	parksj@kli.re.kr
	송유진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사회-사회복지학부	016-644-5220	-	yjsong28@dau.ac.kr
연구 위원	이지연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 전청사3동 통계청 사회통계과	011-9871-0114	042-717-0238	jylee@nso.go.kr
	장지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한국노동연구원	011-324-4493	02-784-9339	jchang@kli.re.kr
학 술 위 원	박수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03호	019-209-8580	02-3156-7159	smpark@kwdi.re.kr
	이성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동 산 6-2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016-9355-2844	-	slee@kangnam.ac.kr
	정기원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1리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053-850-3232	kcheong@cu.ac.kr
섭 외 위 원	김현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 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미국학과	010-4756-8008	053-850-3232	harrishkim@yahoo.com
	이윤석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010-5505-3354	02-2210-5664	yslee@uos.ac.kr
편집 위원장	정성호	강원 춘천시 효자2동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	033-250-6867	shc@kangwon.ac.kr
편 집 위 원	김영범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사회복지연구원 고령사회연구소	-	033-248-3097	-
	이경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2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032-5100-765	-
	이성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산 6-2번지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016-9355-2844	031-280-3691	slee@kangnam.ac.kr
	이윤석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1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010-5505-3354	02-2210-5664	yslee@uos.ac.kr
	정재기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511 숭실대학교 사회학과	-	02-820-0499	jaeki@ssu.ac.kr

한국조사연구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304-28 한국사회과학자료원 5층 (우)110-054
- 대 표 : 이계오(한국갤럽)
- 전 화 : 02-723-0677(간사 박은정), Fax: 02-723-0799
e-mail : kasr99@empal.com
- 연구전문분야
 - 통계조사방법론 및 데이터 분석의 이론 개발과 보급, 각종 통계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통계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
- 홈페이지 : <http://www.kasr.org> , webmaster : 이선정 (한국갤럽)
- 창립일 : 1999.11.13.(법인등록 : 2000. 1. 7.)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예 산 : 4,000만원(2007년)
- 인력(상근) : 1명(간사)
- 회원
 - 정 회 원 : 383명
 - 학생회원 : 51명
 - 기관회원 : 43개
- 연구원 보유현황
 - 박사급 정회원 300명
 - 조사회사 : 30개사

□ 기관연혁

- 1999년 11월 13일 창립
 - 초대 회장 :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창립학술대회 : 1999년 11월 13일 (서울대학교)
 - 2000년 3월 23일 <조사윤리강령> 제정
 - 2000 춘계학술대회 : 2000년 6월 10일 (연세대학교)
 - 인터넷 조사 workshop : 2000년 8월 22일 (숙명여자대학교)
 - 2000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2000년 11월 25일 (서울시립대학교)

- 2대 회장 : 홍두승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사회과학 자료수집과 다변량 분석의 이론 및 실제 : 2001년 4월 21일 (서울대학교)
 - 2001 춘계학술대회 : 2001년 6월 2일 (통계청 대전 청사)
 - 2001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11월 24일 (서울시립대학교)

- 3대 회장 : 박용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02 춘계학술대회 : 2002년 6월 8일 (통계청 대전청사)
 - 2002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2002년 11월 30일(성신여자대학교)

- 4대 회장 : 이계오 (한국 갤럽 자문교수)
 - 2003 춘계학술대회 : 2003년 6월 14일 (통계청 대전청사)
 - 2003 한국갤럽상시상식 및 워크숍 : 2003년 9월 18일 (서울대학교)
 - 2003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2003년 12월 6일(국민대학교)

- 5대 회장 : 이건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2004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갤럽상 시상식 : 2004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관)
 - 2004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4년 11월 26일 (통계청)

- 6대 회장 : 이해용 (성신여대 통계학과 교수)
 - 2005년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갤럽상 시상식: 2005년 6월 17일 연세대학교
 - 2005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5년 12월 9일

- 7대 회장 :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2006년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꺽렵상 시상식: 2006년 6월 1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2006년 워크숍 : 2006년 6월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2006년 추계학술대회 : 2006년 12월 1일 인제대학교
- 8대 회장 : 류제복 (청주대학교 바이오통계학과 교수)
 - 2007년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꺽렵상 시상식 : 2007년 6월 8일 연세대학교 최고경제인과정교실
 - 2007년 춘계워크숍 : 2007년 6월 9일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동
 - 2007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2007년 11월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9대 회장 : 류제복 (청주대학교 바이오통계학과 교수)
 - 2008년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꺽렵상 시상식 : 2008년 6월 13일 동국대학교
 - 2008년 춘계워크숍 : 2008년 6월 14일 동국대학교
 - 2008년 6월 <연구윤리규정> 제정

□ 설립목적

조사연구와 관련이 있는 학계 및 실무 분야 전문가들이 조사연구를 활용하고 연구하는 학문간 및 이론과 실무간 연계

□ 주요사업

- 연 2회의 춘·추계 학술논문발표회의 개최
- 『조사연구』지의 간행
- 외국 조사연구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 회원들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소식지 연 2회 발간
- 조사연구의 이론개발 및 보급/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학술세미나, 워크숍 등)

□ 연구실적 (2007년 학회 학술과제 용역)

학술과제 용역명	발주기관	연구 책임자	금액 (천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표본설계 및 추출	질병관리본부	이계오	38,000
농촌 통계조사 표본설계	농림부	류제복	29,100
월세가격 동향조사 및 주택시장 동향 분석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박진우	103,400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결과자료 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이기재	27,000
국가통계품질진단-농림분야	통계청	이명진	146,900
국가통계품질진단-경기분야	통계청	신기일	138,00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 연구	통계개발원	이건	57,665
재단 주요사업 고객만족도조사	과학문화재단	이명진	38,000
IT인증기기분석을 통한 산업 및 기술 동향 연구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이금희	27,800
퇴원환자조사 표본 보정 및 가중치 산출	질병관리본부	이계오	23,400
2007년 청년패널 조사 표본설계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원	20,000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표본설계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류제복	35,000
보고통계 품질개선 연구 용역	통계청	류제복	28,500
정보통신 신규 통계지표 발굴 용역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이금희	10,000
매월노동통계조사 표본설계 용역	노동부	신기일	26,450
일반인의 통계인식 제고를 위한 통계교육원의 역할설정 용역	통계교육원	이석훈	18,000
2007년 공예통계 및 공예인식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지침서개발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홍기학	18,000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식품섭취량조사	식약청	이계오	18,700
어업경영조사 표본설계 연구용역	수산경제연구원	이계오	29,500
에너지총조사 상설 표본설계 및 기반 구축	에너지경제 연구원	신기일	15,000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조사 표본설계	대한상공회의소	이계오	6,500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 산출	질병관리본부	이계오	19,600

定 款

제정 1999. 11. 13.

개정 2002. 11. 30.

재개정 2007. 6. 8.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조사연구에 관한 학문연구와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 발표회 개최
2. 조사연구 학술지의 간행
3. 국내 조사연구의 개선에 관한 연구토의 및 건의
4. 조사연구의 이론개발 및 보급,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활동 주관
5. 외국 조사연구학회와의 교류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대학 또는 관련기관에 둔다.

제5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 미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원고의 게재 확정시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2007년 6월8일 개정)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2. 준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가 발간하는 회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3년 이상(해외 체류기간 제외)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 (임원의 구성) (2007년 6월8일 개정)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2명
3. 이 사 : 50인 이하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 10명이내로 하되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총 무
 - 나. 학 술
 - 다. 정보 및 홍보
 - 라. 사 업
 - 마.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5. 감 사 : 2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2007년 6월8일 개정)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취임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며, 선거에는 정회원만이 참여할 수 있다.

-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과 2인의 부회장이 협의해 추천하고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연 1회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구

제12조 (기구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운영위원회
- 4. 편집위원회
- 5. 각 특별위원회

제13조 (총회)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 2. 정관의 개정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주요 안건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내규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주요 사항
- ③ 의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시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본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주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 (2007년 6월8일 개정)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10 인-20인 사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 ⑤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각 특별위원회) (2007년 6월8일 개정) ① 본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입회비 및 정기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회장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감독관청에 제출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감사에게 제출 하고, 감사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사업실적과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제6장 보 칙

제21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윤리강령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사회조사(이하 조사로 약칭)의 과학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사윤리강령을 제정한다. 본 강령은 조사자의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연구의 윤리적 요소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자는 조사과제 수행에서, 그리고 조사의뢰자 및 일반인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정직성을 유지한다. 또한 조사자는 본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어긋나는 일체의 작업이나 조사과제를 거부한다.

제1조 조사자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2조 조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1. 조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2. 조사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3. 조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연구결과를 해석하지 않는다.

제3조 조사자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를 조사의뢰자에게 보고하거나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10. 질문지(질문내용)
11. 재통화·재방문·재발송 횟수
12. 표본대체 규칙
13. 응답률
14. 표집오차
15. 가중치 부여 방식

16.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제5조 조사의뢰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자는 조사의뢰자의 사업정보 및 조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한다. 단, 조사의뢰자가 그 정보의 배포를 명시적으로 승인하였을 경우, 또는 본 강령의 제7조에 의하여 배포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사자는 조사기법·인력·장비 등의 한계 내에서 완수할 수 있는 조사과제만 수용한다.

제6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조사자는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 조사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 있다.
3. 조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4. 조사자는 연구를 가장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5. 조사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를 사용할 때도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회원 조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본 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론조사 보도지침

- 여론조사 보도에서 언론인이 던져야 할 20가지 질문 -

언론인과 여론조사자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질문이다. 여기 제시하는 것은 언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기 전에 여론조사자에게 물어 보아야 할 20가지 질문이다. 이것은 여론조사 실시방법에 관한 입문서가 아니라, 현역 언론인들이 여론조사 보도를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언론은 "과학적인" 여론조사만을 보도해야 한다. 여기 제시된 많은 질문들은 어떤 여론조사가 보도할 가치가 있는 과학적 조사인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비과학적 조사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비과학적인 사이버 조사가 많은데 이런 조사는 간혹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의미가 없다. 말하자면 수신자부담 전화를 이용해 참여하는 전화조사, 거리에서 아무나 잡고 하는 조사, 대부분의 인터넷 여론조사, 쇼핑몰 여론조사 등이 그런 예이다.

과학적인 조사와 비과학적인 조사의 두드러진 차이는 누가 응답자들을 선정하는가 하는 점이다. 과학적 조사의 경우는, 여론조사자가 응답자를 규정하고 찾는다. 비과학적인 조사의 경우에는, 대체로 응답자들 스스로가 조사대상자가 되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제대로 이루어진 과학적 여론조사는 응답자들뿐만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까지 알 수 있는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심지어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까지도 알 수 있다. 반면에 비과학적 조사는 단순히 응답자들의 의견을 말해 줄 뿐 그 이상의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언론인들은 여기 제시된 20개 질문을 통해 올바른 여론조사보도를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1. 누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2. 누가 여론조사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조사응답자의 수는 몇 명인가?

4. 조사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5. 조사대상자의 모집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조사대상자를 어느 지역 혹은 어떤 집단에서 구했는가?
6.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응답자들의 대답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인가?
7. 응답률은 얼마인가?
8. 언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9.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했는가?
10. 인터넷이나 웹상에서의 여론조사는 믿을만한 것인가?
11. 여론조사에서 표집오차란 무엇인가?
12. 누가 선두인가?
13. 조사 결과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서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14. 어떤 질문을 사용했는가?
15. 어떤 순서로 질문했는가?
16. 여론조사를 가장한 "푸시 폴"(Push Poll)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 동일한 주제에 관한 다른 조사들이 있었는가? 그 조사들도 같은 결과를 보여 주는가? 다르다면, 왜 다른가?
18. 묻고자 하는 질문은 모두 물었다. 대답 또한 매우 그럴 듯 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 조사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19. 잠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도해야 하는가?
20. 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사)한국조사연구학회 조사연구 윤리규정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연구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으로 칭함)을 제정한다. 이 규정은 조사연구자가 과학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할 때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적 활동을 하는 조사연구자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원은 언제나 최대한의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윤리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회회원은 윤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박탈, 회원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장 윤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는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만약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학회 회원이 타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을 인지하게 되면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윤리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학회는 보고자의 신원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 윤리규정의 개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조사연구자의 윤리

제6조 조사연구자는 조사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 자료수집과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7조 조사연구자는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1. 조사연구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사용한다.
2. 조사연구자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사기법과 분석방법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
3. 조사연구자는 자료에 어긋나게 연구결과를 해석하지 않는다.

제8조 조사연구자는 조사방법이나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밝힌다.

1. 조사자
2. 조사의뢰자
3. 조사목적
4. 조사시기
5. 조사장소
6. 모집단과 표집틀
7. 표본크기 및 산정방법
8. 표집방법
9. 조사방법(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등)
10. 질문지(질문내용)
11. 재통화·재방문·재발송 횟수
12. 표본대체 규칙
13. 응답률
14. 표집오차
15. 가중치 부여 방식
16. 기타 조사 및 분석 절차에 관한 사항

제9조 조사연구자는 조사결과가 일반인에게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 그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제3장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10조 조사대상자에 대한 책임

1.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그들을 모욕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단 조사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밝힐 수 있다.
3. 조사연구자는 조사대상자가 자유의사로 조사를 거절하거나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
4. 조사연구자는 연구를 가장해서 판매나 정치적 선거운동과 같은 다른 행위를 하거나 자신들의 연구를 거짓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5. 조사연구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결과를 사용할 때도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조사연구자는 본 학회의 조사윤리위원회가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조사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물의 출판에 관한 윤리

제12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표절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나 주장이 아닌 경우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동일한 논문을 중복하여 게재할 수 없다.
3. 다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를 재분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분석방법과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출판할 수 있다.

제14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되며,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연구비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자료분석이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때는 자료분석을 한 사람이 반드시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논문심사

1. 편집위원장과 해당 논문을 담당하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알게 된 지식이나 내용을 출판되지 전까지는 투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심사되었으나 게재되지 않은 논문과 관련된 내용을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이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3년 동안 보관하고, 게재되지 않는 논문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4. 저자는 심사위원들의 신원을 알려고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심사위원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회지

○ 조사연구(Survey Research)

- 2000년 조사연구로 창간
- 년 2회 발간(3, 9월), 통권 (2008년 3월) 17권
- 국문지
- 조사연구는 각종 조사와 통계 기법을 활용하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실제 조사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 혹은 이론적 연구논문 등을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학술적 토론의 기회와 조사 관련 학술자료의 제공을 목표로 창간되었으며 2003년 하반기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후보지에 선정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학술지입니다.

* 조사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 논문 양식, 논문 제출 안내, 편집지침, 논문 기고 요령은 홈페이지 참고

2008년 한국조사연구학회 운영위원

■ 임원진

임원	성명	소속및직위	e-mail	연락처
회장	류제복	청주대 바이오정보통계학과 교수	jbryu@chongju.ac.kr	043-229-8201 011-9367-7354
부회장	김병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bjkk@kndu.ac.kr	02-300-2181 010-5084-2181
	이기중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	rhee0408@kookmin.ac.kr	02-910-4736 011-9749-4736
기획이사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yongmink@kookmin.ac.kr	02-910-4538 016-260-4538
학술이사	김청택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ctkim@snu.ac.kr	02-880-6076 010-6488-6076
사업이사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shkang@sungshin.ac.kr	02-920-7476 011-382-4471
총무이사	김선웅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sunwk@dongguk.edu	02-2260-3245 010-2750-0249
이사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dshong@snu.ac.kr	02-880-6414
	박용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yongpark1@naver.com	02-2210-2406 011-9038-6433
	이계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문교수	kolee@gallup.co.kr	02-3702-2582 010-7594-5123
	김해수	통계청 차장	haesoo@nso.go.kr	042-481-2030
	이 건	서울시립대도시사회학과교수	kunlee@uos.ac.kr	02-2210-2632 011-705-4492
	이해용	성신여대 통계학과 교수	hylee@cc.sungshin.ac.kr	02-920-7182 019-305-7755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chwpark@snu.ac.kr	02-880-6342
	안광호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ahnkh@inha.ac.kr	032-860-7740 016-316-7740
	이승욱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leeswook@snu.ac.kr	02-740-8882 011-9084-3954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ywkim@sookmyung.ac.kr	02-710-9434 016-9710-9434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njkang@snu.ac.kr	02-880-9005 016-404-0603
	김주영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jkimsg@sogang.ac.kr	016-211-5646
	노규형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	kyuno@randr.co.kr	02-3484-3000 011-268-0302
	이상경	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	sklee@hri4u.com	02-3218-9690 016-214-4340
	이흥철	(주)Ni-Korea 대표	hchlee@ni-korea.com	02-583-8107

임원	성명	소속및직위	e-mail	연락처
이사	김광기	인제대학원대학교 부교수	liteup@naver.com	02-2270-0982 010-3173-0941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chob@snu.ac.kr	02-740-8873 017-740-8873
	김영석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yseok@yonsei.ac.kr	02-2123-3296 011-719-0266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kwjung77@snu.ac.kr	02-880-5626 016-373-4479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연구실장	vitamine@kedi.re.kr	02-3460-0323 016-709-9243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skcho@cnu.ac.kr	042-821-6376 017-284-6371
	노익상	(주)한국리서치 대표	isroh@hrc.co.kr	02-3014-0009
	박무익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대표	mipark@gallup.co.kr	02-3702-2100
	남궁평	성균관대 통계학과 교수	namkung@yurim.skku.ac.kr	02-760-0465 011-727-0468
	임병훈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	lim6321@hitel.net	019-252-9557 019-252-9557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yoo@dongguk.edu	02-2260-3718 016-271-3718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교육과	leems@ewha.ac.kr	02-3277-2583 011-9639-1252
	허명희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stat420@korea.ac.kr	02-3668-4694 019-385-8063
	김순홍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soonkim@hosim.gwangju.ac.kr	062-362-0778
	이화영	노동부 노동통계 팀장	hwayoung@molab.go.kr	02-500-5515
김종석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정보연구실장	johnstein@hanmail.net	02-3412-2151 010-6785-2151	
감사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vitamine@kedi.re.kr	02-3460-0323 016-709-9243
감사	최현자	서울대 소비자학과	hychoe@snu.ac.kr	02-880-8745

■ 편집위원회

임원	성명	소속및직위	e-mail	연락처
위원장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ywkim@sooknyung.ac.kr	02-710-9434 016-9710-9434
위원	김규성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교수	kskim@uos.ac.kr	02-2210-2505 010-9912-2505
	김병조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bjkk@kndu.ac.kr	02-300-2181 010-5084-2181
	김정택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ctkim@snu.ac.kr	02-880-6076 010-6488-6076

임원	성명	소속및직위	e-mail	연락처
위 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tikim@korea.ac.kr	02-3290-2282 011-9978-8267
	박진우	수원대 통계정보학과 교수	jwpark@suwon.ac.kr	031-220-2123 010-5655-5812
	심희기	연세대 법학과 교수	hgsim@yonsei.ac.kr	033-760-2344 011-769-4392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yeo@snu.ac.kr	02-880-6828 016-9895-2023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leemj@korea.ac.kr	02-3290-2084 016-281-0326
	조성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skcho@cnu.ac.kr	042-821-6376 010-3193-4466
	홍세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eehong@yonsei.ac.kr	02-2123-6212 011-1708-4139

■ 조사윤리위원회

구 분	성명	소속및직위	e-mail	연락처
위원장	강남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njkang@snu.ac.kr	02-880-8005, 016-404-0603
위 원	변종석	한신대 정보통계학과 교수	jsbyun@hanshin.ac.kr	031-370-6771 010-4766-6771
	신창운	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	survey@joongang.co.kr	02-751-5572 016-594-0508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chlee@kookmin.ac.kr	02-910-4262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minlee@cau.ac.kr	02-532-8525
	이윤석	시립대 사회학과 교수	yslee@uos.ac.kr	02-2210-5664 010-5505-3354
	이상경	현대리서치 대표	sklee@hri4u.com	02-3218-9690 016-214-4340

□ 입회안내

○ 회원의 구분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3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합니다.

준회원은 조사연구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1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합니다.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합니다.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회에서 가입을 결정합니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발간하는 회지를 받고 이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사연구학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사결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회비납부 안내

2008년도 회비는 개인 정회원 3만원(준회원은 50%), 단체회원 20만원입니다. 회비납부는 우리은행 632-033698-13-001 (사단법인 한국조사연구학회)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통계진흥원

□ 일반현황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 103호 (우) 135-010
- 전 화 : 02-3443-7954~6, Fax : 02-3443-7957
e-mail : kosa@nso.go.kr
- 홈페이지 : www.stat.or.kr, 통계쇼핑몰 : shopmall.nso.go.kr
- 설 립 일 : 1963. 5. 6.
- 법인성격 : 재단법인
- 예 산 : 176,631만원(2008년)
- 인력(상근) : 16명
- 회 원 : 75개기관

□ 연혁

- 1963. 3. 20 대한통계협회 설립
- 1963. 5. 6 경제기획원장관인가
- 1963. 5. 10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등기
초대 회장에 이은복 선임
- 1965. 3. 제2대 회장에 이은복 연임
- 1967. 3. 제3대 회장에 이은복 연임
- 1967. 9. 사무국에 홍보부 사업부 조사부 설치
- 1969. 3. 제4대 회장에 이은복 연임
- 1971. 2. 제5대 회장에 이은복 연임
임원임기4년으로 개정
- 1971. 4. 상임사무국장 김동현 취임

- 1973. 1. 김동현사무국장 사임
- 1973. 2. 제6대 회장에 변형운 선임 이사개선
- 1977. 2. 제7대 회장에 박홍래 선임 이사개선
- 1981. 2. 제8대 회장에 장신규 선임 이사개선
제2대 사무국장 정인환 취임
사무국 개편강화(조사연구부, 지도부, 홍보부, 총무부 설치)
- 1984. 2. 제3대 사무국장 곽창권 취임
- 1985. 2. 제9대 회장에 장신규 연임 이사개선
- 1986. 2. 제4대 사무국장 정인환 취임
- 1987. 2. 제5대 사무국장 신 윤 취임
- 1989. 2. 제10대 회장에 장신규 연임
임원 임기 3년으로 개정
- 1992. 2. 제11대 회장에 함만준 취임개선
- 1993. 2. 사무국기구축소개편(총무 조사지도부 2부로)
- 1993. 6. ISI기관회원으로 가입
- 1995. 2. 제12대 회장에 함만준 연임 이사개편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 2년으로 개정
- 1997. 2. 제13대 회장에 함만준 연임
- 1998. 5. 신윤 사무국장 사임 제6대사무국장 신경근 취임
- 1999. 2. 제14대 회장에 민태형, 초대 부회장에 신현균 선임
- 2001. 2. 제15대 회장에 민태형, 제2대 부회장에 신현균 연임
- 2003. 2. 제16대 회장에 민태형, 제2대 부회장에 신현균 연임
- 2005. 2. 선임이사 임기 2년으로 개정
- 2005. 12. 제17대 회장에 전주대 선임(회장 상근제로 의결)
신경근 사무국장 사임, 제7대 사무국장 이춘석 취임
- 2006. 2. 선임이사 개편
- 2006. 4. 직제개편(총무팀, 협력사업팀, 간행물발간팀, 정보서비스팀)
- 2008. 1. 제18대 회장에 전신애 취임
- 2008. 2. 선임이사 개편
- 2008. 3. 명칭개정승인: 대한통계협회 → 한국통계진흥원으로
- 2008. 4. 이춘석 사무국장 사임, 제8대 사무국장 정창신 취임

□ 설립목적

대한통계협회가 설립된 1963년 당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던 시기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하는 민간 단체에서는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그 실적을 분석 검토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통계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수요에 부응하고자 통계실무자의 지식과 기술의 향상으로 [양질통계의 적용, 저가공급]을 하도록 하고, 통계작성자와 이용자 그리고 연구자인 [통계인] 상호간의 긴밀한 통계 정보 교환과 친목도모를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한통계협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의 발전으로 통계수요는 각 부문에 걸쳐 다양하고 세밀한 자료의 요구 등 질 양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OECD 가입이후 공해, 환경, 삶의 질에 관한 통계 등 신규개발 또는 재편, 증편하여야할 통계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간 통계청의 대민간 통계정보제공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기능을 수행해온 대한통계협회는 시대상황에 맞는 변화와 도약의 의지를 담아 2008년 3월 ‘한국통계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인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통계의 개발과 진흥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새출발하였습니다.

□ 주요사업

(1) 통계연구

선진 통계이론과 기법의 도입 등으로 통계발전에 관한 연구와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가공, 외부로부터 수탁하는 통계연구용역을 수행, 연구결과를 연구보고서,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발표

(2) 통계조사

풍부한 통계조사경험을 가진 통계조사 기획요원의 실사경험과 고도로 훈련된 조사원을 활용, 각종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자료를 위탁한 이용자에 제공

(3) 통계자료은행

통계정보의 다각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대민간 통계정보 제공

대행기관으로,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인구·노동·산업, 보건·국제통계 등 국내외통계정보를 CD-Rom이나 e-mail로 국내외 수요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본 진흥원은 현재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6개 부가가치 사업체에게 정기적으로 연간자료를 제공하는 등 대민간 통계정보서비스 수행

(4) 통계간행물 보급

통계청,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한국은행 등에서 발간하는 50여종의 주요통계간행물을 위탁 또는 복제발간하여 이용자에 보급하며 본 진흥원의 회원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책자에 한하여 무상으로 제공

(5) 사회조사분석사 관리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모든 현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보다 양질의 통계조사자료를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00년부터 정부고시를 통하여 배출되는 사회조사분석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

(6) 통계에 관한 컨설팅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업무 수행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통계정보이용, 통계기술에 관한 사항 등, 통계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음

(7) 통계연수

통계교육원과 합동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의 통계담당자에 대한 통계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2년마다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ISI(국제통계기구) 총회에 본 진흥원 회원단체 임직원이 참가토록 하는 등 해외 교육훈련을 주선

(8) 통계인 친목도모

정부 및 민간의 모든 통계작성기관, 이용기관 및 연구기관과 이에 종사 하는 통계인 상호간의 통계정보교환이나 업무협조가 원활하도록 주선하고 매년 9월 1일 [통계의 날] 기념행사와 친선체육대회 등을 통하여 친선 도모 및 유대를 강화하며 통계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

□ 주요사업실적

- 1963. 3. 대한통계협회 설립
- 1963. 3. 1960년 인구센서스자료 평가분석
- 1968. 12. 물가지수 작성상의 제문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 1969. 7. 1966년 인구센서스 결과의 종합분석과 장래추세에 대한 연구
- 1970. 2. 1960년대 물가의 구조와 추이 및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지수 설계 문제연구
- 1970. 4. 도시와 농가 가계조사결과 링크 및 소비합수 작성 연구
- 1970. 9. 노동력 인구이동 및 노동생명표 작성
- 1971. 5. 197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사후조사 자료 평가
- 1971. 5. 물가통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1971. 9. 제1회 전국 통계인 대회
- 1973. 4. 다목적 표본 활용에 의한 출산변동 및 가족계획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가족계획연구원)
- 1974. 2. 한국광공업센서스통계평가(일본아세아경제연구원)
- 1974. 3. 인구통계세미나
- 1975. 11. 정부통계의 문제점(대한통계협회)
- 1976. 8. 농촌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 1976. 9. 한국통계의 장기발전에 관한 연구(경제기획원)
- 1977. 5. 서울특별시 주요통계 기본설계(서울특별시)
- 1977. 5. 양곡소비량조사 표본설계(농수산부)
- 1979. 8. 전국가전기기보급율조사 표본설계(한국전력)
- 1979. 9. 수산물비계통 생산량조사 표본설계(농수산부)
- 1980. 11. 중소기업통계재편가공과 분석(중소기업진흥공단)
- 1981. 7. 제2회 전국통계인 대회
- 1981. 10. 농촌개발을 위한 사회경제지도표 작성법(FAO)
- 1982. 2. SIAP연수교재 번역(경제기획원)
- 1984. 4. 농수축산물 마케팅기법 지도사업(한국냉장)
- 1984. 5. 주요산업 다목적 표본설계(대한상공회의소)
- 1984. 6. 에너지 통계작성을 위한 표본조사방법론 연구
- 1984. 6. 제3회 전국통계인대회 및 통계학술 심포지움 개최
- 1984. 12. 농업부문 사회지표·경제계정·공공지출지표작성(FAO)
- 1985. 7. 제4회 전국 통계인대회 및 통계학술 심포지움 개최
- 1985. 12. 경제지표와 체계화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제기획원)

- 1986. 5. 국제표준무역분류 개정안 번역(경제기획원)
- 1986. 9. 제4회 전국통계인대회 및 통계학술심포지움 개최
- 1986. 11. 통계지표로 본 도시 농촌의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87. 2. 농촌개발을 위한 사회지표작성법(FAO)
- 1987. 5. 제6회 전국통계인대회 및 통계학술 심포지움 개최
- 1987. 7. 에너지소비통계 조사를 위한 수요부문별 다목적 표본설계(에너지경제연구원)
- 1987. 11. 가구표본조사다목적 표본설계(경제기획원)
국민계정 편람 번역(경제기획원)
- 1988. 2. 어가경제조사 표본설계 및 산림통계조사 업무개선을 위한 학술용역
(농림수산부)
- 1988. 5. 인구이동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경제기획원)
- 1988. 12. 제7회 전국통계인대회 및 통계학술심포지움 개최
- 1989. 5. 전국식생활의식구조조사(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 1989. 7. 양곡소비량 및 재고량조사 표본설계(농림수산부)
- 1990. 3. 에너지총조사 표본설계 및 통계학술 심포지움 개최
- 1990. 9. 제8회 전국통계인대회 및 통계학술심포지움 개최
- 1990. 10. 인천수해지구 수도(비)감수량 피해조사(대림산업주식회사)
- 1990. 12. 1990년 농어업총조사 결과표와 사후조사 표본조사(농림수산부)
- 1991. 11. 통계학술심포지움(북방통계) 개최
- 1992. 10. 어업기본통계조사 표본설계(농림수산부)
- 1992. 11. 수산물비계통생산고조사 표본설계(농림수산부)
- 1992. 11. 국민식생활의식구조조사(식생활개선범국민운동본부)
- 1993. 6. ISI 기관회원으로 가입
- 1993. 11. 어가경제조사 표본설계(농림수산부)
- 1994. 8. 통계학술심포지움(세계화통계) 개최
- 1994. 9. “통계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9월 1일로 결정
- 1995. 9. 제1회 “통계의 날” 기념식(유공자포상, 심포지움, 경진대회 리셉션 등)
통계청의 대국민통계정보대행기관지정
- 1996. 9. 제2회 “통계의 날” 기념식
- 1996. 10. 에너지총조사 표본설계(에너지경제연구원)
- 1996. 11. 보건복지가구통계조사 조사구 설정(한국인구보건사회연구원)
- 1997. 4. 양곡소비량조사 표본설계(농림부)
- 1997. 5. 가축통계조사 표본설계(농림부)
- 1997. 6. 어업기본통계조사 표본설계 (해양수산부)

- 1997. 7. 수산물비계통생산고조사 표본설계(해양수산부)
- 1997. 8. 서울시보건지표조사 표본설계
- 1998. 4. 어가경제조사표본설계(해양수산부)
- 1999. 3. 제2차 중국농업통계기술지원 사업참여(KOICA)
- 2000. 3. 장애인실태조사 표본추출 용역(보건사회연구원)
- 2000. 4. 중소기업통계개선방안연구용역(중소기업특별위원회)
- 2000. 12. 제3차 중국산업통계기술지원 사업참여, 2002년까지 계속
- 2001. 10. 고용구조조사표본설계 연구용역(한국산업인력공단)
- 2002. 7. 어업기본통계조사 표본설계(통계청)
- 2002. 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표본설계(한국산업인력공단)
- 2002. 12. 제3차 중국농업통계기술지원사업완료(중국가축통계표본설계)
- 2005. 3. 최저생계비계측조사를 위한 표본설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7.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표본설계(중앙고용정보원)
- 2006. 3. 국가통계품질진단 기업경영, 농림수산연구용역(통계청)
- 2006. 3. 가정부문 모집단추계를 위한 표본설계(에너지관리공단)
- 2006. 5. 제6차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표본설계(한국고용정보원)
- 2006. 7. 제12회 「통계의 날」 관련행사 용역(통계청)
- 2006. 8.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국토연구원)
- 2006. 9. 여성가족통계연보 발간용역(여성가족부)
- 2007. 3. 국가통계품질진단 교육, 사회·문화 연구용역(통계청)
- 2007. 4.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수탁(통계청)
- 2007. 5. 협회창립 44주년기념 회원사 CED초청 조찬가연회 개최
- 2007. 6. 농림어업총조사분석 용역(통계개발원)
- 2007. 8. 부품소재산업동향조사 표본설계(한국기계산업진흥회)
- 2007. 8. 제13회 「통계의 날」 기념식 수탁(통계청)
- 2007. 9. 여성가족통계연보 편집발간 용역(여성가족부)
- 2007. 9. 국제통계제도 비교연구 용역(통계개발원)
- 2007. 9. 폐기물관련 통계작성기반확충진단 용역(한국환경자원공사)
- 2007. 9. 교육기법관련 용역(통계교육원)
- 2008. 1. 통계전시관 관리운영 수탁(통계청)
- 2008. 2.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복제 발간
- 2008. 3. 국가통계품질진단 사회부문 I 연구용역(통계청)
- 2008. 5. 국가통계보급·이용에 관한 홍보업무 수탁(통계청)

定 款

1963. 3.20 제정	1989. 3. 8 개정
1971. 2. 2 개정	1991. 4. 2 개정
1977. 5. 5 개정	1992. 5.23 개정
1979. 7.19 개정	1995. 4.18 개정
1981. 5. 7 개정	1996.11.23 개정
1981.12.23 개정	2000. 2.25 개정
1982. 4. 9 개정	2003. 2.26 개정
1983. 8.31 개정	2005. 2.23 개정
1984. 3.19 개정	2005.12.20 개정
1985.10. 7 개정	2008. 2.27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진흥원은 통계의 개발·진흥을 위한 지식 및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통계인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통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통계실무 및 이론에 관한 연구 및 장려
2. 연구발표회, 강습회 등의 개최
3. 통계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
4. 조사 설계 등 통계조사 지원
5. 통계관련 국내외 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6. 통계에 관한 정기간행물과 도서의 발간 및 보급
7. 통계자료의 수탁처리 및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8. 통계품질진단 및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10. 통계유공자의 표창
11. 통계 및 통계작성에 관한 홍보
12. 기타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 ① 진흥원의 회원은 진흥원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 회원의 구분은 명예회원, 찬조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명예회원은 진흥원의 육성에 공헌한 자이거나 통계분야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자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회의 동의로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찬조회원은 진흥원에 자산을 기부한 자로 한다.
3. 정회원은 진흥원에 제7조에 따른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4. 준회원은 진흥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강좌에 수강한 자 또는 진흥원에서 보급하는 통계간행물을 연간 정기구독한 자로 한다. 단, 준회원의 자격은 1년간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진흥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준회원은 진흥원에서 보급하는 통계간행물의 정기구독신청서와 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통계 강좌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한 것으로 한다.

제7조 (회비) ① 정회원은 가입 신청시 납입하는 가입비와 진흥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부과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진흥원의 보유 자료를 이용하는 권리
2. 진흥원 주최의 각종 행사 및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3. 진흥원의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

② 단체회원의 대표권행사는 단체의 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봉사) ① 진흥원은 회원에 대하여 각종 통계조사와 자료의 이용방법 및 그 분석방법 등에 관한 지도 지원을 한다.

② 진흥원은 회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통계간행물을 배부하고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정관상 제 규정, 진흥원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회비의 납부 의무
3. 진흥원의 회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제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탈퇴한다. 단, 이미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으로서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12조 (임원종류 및 정수)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1인
2. 이사는 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하되 선임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 1인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이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자격) ① 진흥원의 원장 및 이사는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1.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2.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통계담당관
3.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담당관
4.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장
5.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담당관
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7. 한국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장
8. 국민은행 국민은행연구소장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장
10.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11.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장

제14조 (고문) 원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학식이 있는 자를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으로 선임된 원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임기를 중임회수에서 제외한다.

② 선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원장이 결위된 때에는 원장이 보선되기까지 선임이사 중 연장자가 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과 업무집행현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지위 및 보수) ① 상임하는 원장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② 기타 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회) 진흥원은 제4조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사무기구) 진흥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성) ①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서 구성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의 종류)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한다.

1.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이 소집한다.

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다.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팩스 등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단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인사·조직·예산·회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임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만 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3명 이상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국가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 (재산) 진흥원은 다음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부한 금일십만원
2. 설립 후 재산으로 지정하여 교부 또는 기부한 재산
3.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한 재산

제29조 (경비) 진흥원의 경비는 제28조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 및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보조금, 교부금, 기부금, 회비, 사업수입, 통계정보와 간행물의 판매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익년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결산) ① 원장은 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의 의견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전년도 결산은 회계연도개시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한다.

제 7 장 해 산

제32조 (해산결의) 진흥원의 해산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청산인) 진흥원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34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처리) 진흥원의 청산 및 해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 8 장 보 칙

제36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08. 2. 2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통계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제 규정과의 관계) 제 규정상의 “대한통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한국통계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당연직 이사의 변경) 본 정관 의결 이후 조직의 명칭 또는 직제가 변경된 경우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수정하고, 종전의 당연직 이사는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변경된 명칭 및 직제에 따라 이사직을 승계한다.

□ 통계정보지

- 한국통계진흥원에서는 국내외의 통계소식과 통계발전을 위한 각종 통계논단, 통계연구결과, 통계조사경험수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통계의 창’을 연2회(상, 하반기) 발간하여 전국의 통계생산 이용기관 및 단체와 통계인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 내용은 진흥원에서 우수사례와 내용들을 저명인사에게 청탁 기고하는 한편 애독자의 다음 내용의 원고를 받아 수록 발간하고 있습니다.
 - 통계에 관한 건설적인 의견
 - 국제통계학회세미나 등 참석보고, 해외시찰소감
 - 통계이론 및 기술에 관한 연구논문
 - 기타 통계에 관한 연구, 경험, 수기 등
- 또한 통계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통계전산자료와 각종 통계간행물 이용 안내를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구분

본 통계진흥원의 회원은 진흥원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통계작성, 이용 및 연구기관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

- (1) 명예회원 : 본 진흥원 육성에 큰 공헌을 한 사람 또는 통계분야에 대한 업적이 현저한 사람 중 원장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사람
- (2) 찬조회원 : 본 진흥원에 자산을 기부한 사람
- (3) 정회원 :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으로서 소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4) 준회원 : 본 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강좌를 수강한 자 또는 진흥원에서 보급하는 통계간행물을 연간 정기구독하는 자
- (5) 특별회원 : 통계자료서비스센터 설치·관리 등을 위해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 회원에 대한 지원

- (1) 진흥원은 회원에 대하여 각종 통계조사와 자료의 이용방법 및 그 분석방법 등에 관해서 지도·지원
- (2) 진흥원은 정회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통계간행물을 배부하고,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하도록 제공
- (3)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각종행사와 해외연수 등의 참가 및 이의주선
- (4) 통계공로자 표창(매년 9월 1일, 통계의 날 기념행사때)

□ 사업소개

한국통계진흥원은 통계청에서 발간되는 통계책자 및 CD 총판점으로 지정받아 판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료보급은 연간 구독 신청과 수시 신청, 그리고 통계쇼핑몰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마이크로통계자료 이용수요에 부응하여 통계청에서 가구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저장하고 있는 각종 마이크로통계자료를 자료수요자의 주문내용에 의거 가공·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 통계자료의 종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 : 광공업통계조사 등 7종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료 : 인구주택총조사 등 21종

○ 기업체모집단 명부자료 : 사업체의 기본정보를 수록한 자료
(단, 국가승인통계에 한함.)

마이크로통계자료(조사표수록자료) : 조사표에 수록된 제공 가능한 항목별자료

집계자료 : 조사표자료를 통계표로 집계한 자료 통계조사별 자료제공범위

① 사업체부문(7종):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도소매서비스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② 가구부문(7종): 가계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가계자산조사, 사회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력실태조사, 사교육비실태조사,

- ③ 인구부문(4종):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통계, 인구동태통계, 사망원인통계
- ④ 농어가부문(9종):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 양곡소비량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 ⑤ 기타(1종): 국부통계조사

○ 자료제공 신청절차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별 자료제공범위 검색한 후 한국통계진흥원 (02) 3443-7954~6로 문의하거나 상담 후 <http://kmdss.nso.go.kr/mdssexst/>의 위탁처리신청서작성으로 신청

○ 자료제공 방법

- 통계청 또는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하거나 이용자가 통계청의 시스템인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Micro Data Access Center)에서 직접 이용 (ON-SITE ACCESS : 현장자료출력방식)

* 마이크로데이터 :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상의 오류 등을 제거한 통계자료작성의 기초자료를 말한다.

○ 자료제공 매체

- 용지출력, 디스켓, CD-ROM, e-mail, 기타

○ 자료제공 비용 : 통계자료제공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 부담

□ 통계자료 제공비용 산정규정

통계청통계자료제공규정 제5조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원시자료(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에게 자료제공 시 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

1. 자료출력료(통계청고시 제2005-4호)

○ 자료출력료

기본료(20,000원) + 추가비용(1,500원 ×1MB초과비용)

- 출력용량 1MB까지는 20,000원
 초과하는 용량은 1MB당 1,500원씩 추가부과
 예) 2MB인 경우→20,000원(1MB, 기본)+1,500원(초과 1MB)= 21,500원

2. 소프트웨어개발비(정보통신부고시 제2005-22호(2005.5.14))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방법

- ▶ 개발비=개발원가+직접경비+이윤
 - 개발원가
 보정전개발원가(코드라인수×코드라인당 단가)×보정계수
 보정전개발원가(코드라인수×3,354.4)×0.6708
 - 직접경비
 컴퓨터시스템 사용료, 소프트웨어 도구 사용료
 제출문서의 인쇄, 청사진비 등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
 - 이윤
 개발원가×10%

▶ 코드라인당 단가

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코드라인당단가	1,991.6	2,515.8	3,354.4	2,630.6	10,482.4

- ▶ 보정계수
 - 계산식
 규모×어플리케이션유형×개발언어×품질 및 특성
 =0.65×1.2×0.8×1.075=0.6708

3. 신청 및 문의(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

- 전 화 : (02)3443-7954~6, FAX : (02)3443-7957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 103호
 (우 135-010)
- e-mail : ksa@nso.go.kr

한국통계진흥원 임원진 주소

직책	성명	소속	주소
원장	전신애	한국통계진흥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132 아름마을 건영아파트 109-1401
선임이사	남 변	전 통계청 국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여의도자이아파트 301-3903
	김태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8의 56
	이석훈	충남대 통계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빛아파트 108-904
	류계복	청주대 통계학과 교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29-1 신동아아파트 9-1005
당연이사	정규남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김규진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통계 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김영균	보건복지가족부 통계담당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이화영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장혁제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별관 1동)
	최춘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
	김상로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장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0
	지동현	국민은행 국민은행연구소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2
	김덕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장	서울시 중구 순화동 215 바비엡3차 10층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감사	노재곤	전 통계청 과장	대전시 서구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101-606
사무국장	정창신	한국통계진흥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동양월드아파트 1804

통우회

□ 일반현황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번지 서울통계사무소 1층 (우) 135-010
- 전화 : 02-3444-4429(통우회 사무국), 042-527-9304(통우회 사업본부)
- 홈페이지 : www.statob.or.kr
- 2007년 결산
 - 당기수입 : 8,353천원
 - 당기지출 : 5,508천원
 - 기 금 : 24,784천원
- 회원수 : 406명

□ 설립목적

軍政廳 庶務處 統計署로부터 調查統計局이 創立된지 어언 42週年을 맞이하였습니다.

當局은 1945年 解放과 함께 在朝鮮 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 庶務處 統計署로서 日帝當時의 事務上 整備를 存續시켰으며 1948年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과 동시에 南朝鮮 過渡政府로부터 政權移讓에 따라 公報處 統計局으로 移管되었으며 6·25 事變後 政府의 還都와 아울러 1952년부터 統計行政의 實質的인 事務를 遂行하여 온 바, 統計機能 強化를 目的으로 한 政府機構 改正에 따라 1955年 2月 2日자 公報室에서 內務部에 移管 그후 統計事務의 圓滑한 運營은 勿論 合法的인 事務組織을 期하기 위하여 現在 中央各部處에 分散된 統計機能을 有機的으로 綜合調整과 同時 統計의 正確性을 確立함에 있어서 統計體系의 整備, 統計調查의 重複除去와 統計의 改善發達을 期하고자 1962年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으로 發足하였습니다.

其間 오랜 歲月을 두고 統計란 過去와 現在의 現狀으로부터 法則性을 發見하고 이를 基礎로 未來를 豫測하는 科學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現代的, 合理的 行政

遂行을 可能케 하는 必要不可缺한 道具가 되어 왔습니다.

50年代初의 우리나라 經濟는 貧困, 失業, 落後한 産業社會 또한 統計公職者로서 定着된 廳舍도 없이 彷徨하는 그 어려운 時期에 出發하여 35餘年間の 歲月을 우리 統計公職者는 同苦同樂하여 젊음을 불사르고 退職 또는 他機關에 轉職하여 별뿔히 헤어진 同志가 800餘名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各界各層에서 열심히 奉仕하고는 있으나 過去 統計局에서 苦樂을 같이 하던 옛 同僚들의 近況 및 消息조차 모르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여 오던중 調查統計局의 도움 아래 뜻있는 분들의 誠意로 同志들 相互間 親睦의 契機를 마련하고자 87年 3月 統友會가 正式發足하게 되었고, 現在 會員 300餘名の 모임체로 發展하였습니다.

其間에 熱意와 關心이 있는 會員들의 基金贊助로 2,000餘萬원이 造成되었으나 이는 앞으로 本會의 自立基盤構築을 위한 事業資金으로 積立하여 왔으며 따라서 本會運營은 基金을 축내지 않고 會費에만 依存하여 遂行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會員들의 負擔도 加重되거니와 本會 本然의 目的遂行에도 未盡한 狀態였습니다.

이제 自立成長을 위한 自體事業을 運營하여야 할 時期가 되었다고 보아 몇가지 事業을 하고자 먼저 必要한 法人 設立許可를 얻고자 主務官廳인 經濟企劃院에 許可申請을 하게끔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事業을 成功的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會員들의 努力은 말할 것도 없고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의 絶對的인 協調가 있어야 하겠으며 그리됨으로써 우리 會員들의 元氣는 百倍하여 名實相扶한 本會를 盤石위에 構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本會 會員의 來日의 希望과 生氣를 북돋아 주어 繼續國家, 社會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趣旨가 있는 것입니다.

1987.11.

社團法人 "統友會" 設立準備委員會

委員長 咸萬準

□ 주요사업

- 이사회 및 총회 개최
- 회원 연락체계 정비
- 경조사 홍보
- 회원 친목 등산대회
- 회원 친목 바둑대회

定 款

1987.12.24. 制定
1989. 3.11. 改正
1990. 3.10. 改正
1991. 3. 9. 改正
1993. 3.13. 改正
2003. 3.20. 改正
2003. 11.14 改正

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의 名稱은 社團法人統友會(以下 “本會”라 한다)라 稱한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會員相互間의 親睦과 相扶相助로서 會員의 福利增進을 도모하며, 專門的이고 豊富한 經驗으로 統計業務遂行에 관한 建議 및 諮問에 응하여 統計行政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分會를 둘 수 있다.

第 4 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會員親睦 및 福利厚生事業
2. 相助制度의 運用 및 相助基金의 增殖事業
3. 慶事弔慰등 扶助事業
4. 統計 및 統計行政發展支援을 위한 調査 및 研究事業과 其他 受任用役事業
5. 電算用品 및 事務用品 供給, 統計情報 電算入力資料의 處理와 供給, 物價調査, 印刷, 프린트 등 附帶事業
6. 其他 上記 各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과 本會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 二 章 會 員

第 5 條 (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 準會員, 特別會員, 名譽會員으로 區分하고 그 資格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正會員

1948年 8月 15日 以後 統計局(調查統計局) 또는 統計廳에 在職하였다가 退職하였거나 他機關에 轉職한 사람

2. 準會員

統計廳에 在職中인 職員中에서 本會의 事業趣旨에 呼應하여 入會한 者

3. 特別會員

本會의 事業趣旨에 呼應하여 入會한 者(法人包含)

4. 名譽會員

本會發展에 寄與한 功勞가 顯著하다고 認定되어 理事會에서 推戴된 人士

第 6條(會員의 加入 및 脫退) 本會의 會員이 되고자 할 때에는 入願을 提出하고 所定의 入會金을 納付하여야 하며 本會를 脫退하고자 할 때에는 脫退願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 7條(會員의 除名) 本會 會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除名한다.

1. 本會 目的에 違背되는 行위를 하거나 本會事業을 故意로 방해한 會員
2. 會員으로서 威信과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會員
3. 會員으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 會員

第 8條(會員資格의 喪失) 本會의 會員은 除名 또는 死亡함으로써 會員資格을 喪失한다.

第 9條(會員名簿) 本會는 會員의 姓名, 住所, 職業, 電話番號등을 記載한 會員名簿를 印刷하여 會員에게 配布한다.

第三章 任 員

第 10條(任員의 種類와 定數) 本會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名
2. 副會長 5名
3. 理 事 10名 以上 20名 以下
4. 監 事 2名(監事 2名中 1名은 準會員中에서 들 수 있다)

第 11條(任員의 選出) 本會의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 12條 (任員의 任期)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② 本會의 任員中 缺員이 發生하여 補選이 必要한 경우에는 臨時總會를 召集하여 補選하며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 13條 (任員의 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轄하며 總會의 議長이 된다.

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命한 副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理事는 會長·副會長을 補佐하며 本會의 理事會 構成員이 된다.

④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 14條 (顧問) 本會 運營에 관한 諮問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顧問을 둔다.

1. 統計廳長과 本會의 會長을 歷任한 會員
2. 理事會에서 推戴된 人士

第 四 章 總 會

第 15條 (總會의 區分)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② 定期總會는 每 事業年度 開始後 3月以內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開催한다.

第 16條 (總會의 召集) ① 定期總會는 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② 臨時總會는 會長 또는 會員 50名 以上の 要請에 따라 會長이 召集한다.

③ 會長은 總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會議目的, 日時, 場所, 會議案件, 其他 必要한 事項을 會議開催 7日前에 書面으로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을 要할 때에는 그 期間을 3日로 短縮 할 수 있다.

第 17條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하여 決定한다.

1. 定款의 改正
2. 任員의 選出 및 解任
3. 事業計劃의 承認
4. 豫算 및 決算의 承認
5. 監査報告의 接受 및 承認
6. 財産의 取得과 處分 및 借入

7. 其他 總會에 附議된 案件

第 18條 (議決定足數) ① 總會는 在籍正會員 10分の1 以上 出席으로 開會한다.
② 總會는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9條 (書面決議) 會長은 緊急을 요하는 事案에 대하여는 書面에 의한 贊否를 求하여 總會에 가름할 수 있다.

第 20條 (議事錄의 作成) ① 總會의 議長은 議事錄을 作成하고, 이를次期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② 議事錄에는 議長과 出席理事 3名以上の 記名捺印을 받아야 한다.

第 五 章 理 事 會

第 21條 (理事會의 構成) ① 理事會는 第11條에 의하여 選出된 任員으로 構成한다.
② 會長이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命한 副會長이 이를 代行한다.

第 22條 (理事會의 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 또는 理事 3分の 1이상의 要請에 의하여 會長이 召集한다.
② 召集通知는 第17條 3項을 準用한다.

第 23條 (議決定足數와 議事錄의 作成) 第19條, 第20條 및 第2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24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하여 議決한다.

1. 總會附議事項
2. 總會召集決定
3. 任員의 選·解任
4. 顧問委囑提請
5. 事業計劃 樹立 및 修正
6. 豫算編成과 追更 및 決算
7. 新規事業目的의 資産取得 및 重要資産의 處分
8. 資金의 借入
9. 入會金과 會費에 關한 事項

10. 會員의 入會
11. 報酬 및 手當의 支給對象, 金額
12. 組織의 編制와 定員
13. 相助金制度의 運用
14. 總會에서의 受任事項
15. 附帶事業의 決定
16. 會員의 除名
17. 其他 本會 運營에 관한 重要事項 中 會長 또는 理事 1/3以上の 提議事項

第六章 財政 및 會計

第 25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연도는 政府會計연도에 따른다.

第 26條 (會計의 區分) ① 本會의 會計는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로 區分한다.

② 一般會計는 會費, 入會費, 贊助金, 事業收入金を 歲入으로하고 本會運營에 所要되는 經費 및 特別會計 轉出金を 歲出로 한다.

③ 特別會計는 一般會計轉入金과 第4條에 의한 事業收入金を 歲入으로하고 事業費와 一般會計轉出金은 歲出로 한다.

第 27條 (事業計劃의 樹立 및 豫算編成) 會長은 每 會計연도初에 事業計劃書와 豫算(案)을 編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確定시켜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할 때에는 前年度 範圍안에서 執行하고 理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28條 (基金) 本會基金은 會員으로부터 徵收하는 會費, 贊助金 및 第4條에서 規定한 事業에서 發生한 利益金으로 造成한다.

第 29條 (基金의 運用) 基金은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業을 위하여 運用한다.

1. 金融機關에 預置(事業資金除外)
2. 相扶相助金(婚喪費)의 支給
3. 第4條에서 規定한 事業
4. 其他會員의 厚生福利事業

第七章 機 構

第 30 條 (事務局 및 事業本部) ① 本會의 業務를 원활히 遂行하기 위하여 事務局과 事業本部를 둘 수 있다.

② 事務局에 事務局長과 若干名の 事務職員을 두고 事業本部에는 本部長을 둔다.

第 31 條 (其他 機構의 設置) 會長은 必要에 따라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各種 委員會와 附設研究所 및 其他 必要한 機構를 둘 수 있다.

第 31 條의 2 (統計品質管理委員會의 設置) ① 統友會산하에 附設統計品質管理委員會(이하 研究會)를 둔다

② 研究會의 會員은 機關會員과 個人會員으로 構成한다

③ 研究會의 會員의 資格은 統計品質管와 關聯한 事業을 運營하거나 본 研究會 趣旨에 贊同하는 機關또는 個人으로 한다

④ 研究會에 가입하고자하는 機關또는 個人은 소정의 加入申請書를 제출하여 統友會長의 승인을 得하여야 한다

第八章 補 則

第 32 條 (解散) ① 本會는 會員 3分の2 以上の 贊成으로 解散을 議決할 수 있다.

② 本會가 解散을 議決하였을 때에는 統計廳長의 許可를 받아 解散登記를 하고 이를 申告한다.

第 33 條 (清算人) 本會가 解散할 때에는 清算人을 總會의 決議에 따라 會員 중에서 이를 選任한다.

第 34 條 (殘餘財産의 處分) ① 清算人은 지체없이 財産의 狀況을 調査하여 財産目錄, 貸借對照表 및 收支計算書를 作成하여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 本會 解散時 殘餘財産이 있을 때에는 總會의 決議에 따라 處分한다.

第 35 條 (運營規程) 本會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 規程은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會長이 定한다.

附 則

1. 本定款은 統計廳長의 設立許可와 法院의 設立登記를 畢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本會의 最初의 會計年度는 本會가 設立된 날로부터 該當年度의 12月 31日까지로 한다.
3. 本會 設立當時의 統友會 會員은 本會 會員이 된다.
4. 本會 設立當時의 統友會의 基金會費等 또는 財産은 本會에 歸屬한다.
5. (施行日) 本 定款은 1987年 12月 24日부터 施行한다.
6. (施行日) 本 定款은 1989年 3月 11日부터 施行한다.
7. (施行日) 本 定款은 1990年 3月 10日부터 施行한다.
8. (施行日) 本 定款은 1991年 3月 9日부터 施行한다.
9. (施行日) 本 定款은 1993年 3月 13日부터 施行한다.
- 10.(施行日) 本 定款은 2003年 3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11.(施行日) 本 定款은 2003年 11月 14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改正任員의 任期는 새로 選任되는 任員부터 適用한다

□ 산하연구회

<통계품질관리연구회>

○ 연구회 설립취지

통계청에서 오랜기간 동안의 근무경험과 고도로 훈련된 통계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단법인 통우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통계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우회 산하에 「품질관리 연구회」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 연구회에서는 통계조사 결과의 품질관리는 물론 각종 통계기법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자 하며 또한 본 연구회는 기관회원제도를 도입하고 회원기관에 대하여서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 연구회의 주요기능

가. 통계발전에 관한 종합적 연구

통계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통하여 통계의 질을 높이고 통계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며 아울러 통계발전의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통계작성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한다.

나. 통계조사 대행

풍부한 현장 통계조사경험을 가진 통계조사기획요원과 잘 훈련된 현장조사 경험자를 활용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품질의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다. 통계에 관한 컨설팅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업무수행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하여 통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통계전반에 관한 기술적 조언 및 자문에 응한다.

라. 사회조사분석사 관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격고시(국가기술 자격법 제 10조)규정에 의거 실시한 통계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380명을 관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조사분석사들을 한시적으로 활용한다

○ 품질관리연구회 임원

- 연구회장

김경중(경제학박사, 전 통계청 기획국장, 전 공정위상임위원회)

- 연구위원

계훈방(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경창(홍익대학교 교수, 전산학 박사)

김태헌(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남번(전 통계청 기획국장, 현 경기대 통계학과 대우교수)

송동섭(단국대학교 재무처장,교수, 경영학 박사)

신현균(전 제5대 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 회장, 현 통우회장)

임성곤(전 통계청 통계연수원장, 동국대 통계학 강사)

이강철(목원대학교 교수)

이경의(전 통계청 부이사관, (주)컴택 회장)

전태윤(전 동아대학교 교수)

정연모(경희대학교 전자공학대학 교수, 공학박사)

정재구(경기대학교 교수)

조휘갑(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 대학원 초빙교수)

○ 품질관리연구회 지방조직

사무소명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지회담당	비고 (인원)
서 울	서울강남구논현동71(서울세관별관) (135-702)	02-3438-8502	이영근	67
부 산	부산 연제구 연산2동 1474-1 (611-829)	051-850-3302	정병준	33
대구경북	대구 북구 동천동 951-1 (702-250)	053-609-6511	류연창	31
인 천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60 (405-841)	032-460-2510	석춘호	14
광주전남	광주 서구 유촌동 840 (502-719)	062-370-6011	유영렬	25
대전충남	대전 서구 갈마동 316-3 (302-806)	042-534-9304	송영수	37
경 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3-9 (442-835)	031-225-4627	홍은표	35
강 원	강원 춘천시 후평동 240-3 춘천지방합동청사 (200-723)	033-258-3653	이유성	24
충 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27번지 (361-823)	043-299-6010	김종혁	15
전 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63-17 (560-293)	063-220-7901	양청부	24
경 남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3-2번지 (641-725)	055-266-8854	이고성	17
제 주	제주시 도남동(청사로)18번지 (690-029)	064-728-5801	양수창	4

통우회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주요경력	주소	연락처
회장	신현균	전 통계청 통계연수원장 전 통계청 자료관리국장 전 신세계투신 상임감사	영등포구 신길3동 4933번지 우성@ 502동 903호	02-6265-9537
부회장	남 번	전 통계청 통계연수원장 전 우리증권 상임감사 현 경기대 통계학 대우교수	영등포구 여의도동 47번지 여의도자이@301동3903호	02-768-8005
	노재곤	전 통계청 정보처리과장 전 통계청 산업통계과장 전 통계청 총무과장	대전시 서구 둔산2동 샘머리@101동606호	042-482-7303
이사	강대한	전 통계청 서울통계사무소	성남시 증원구 성남동 3126 금호어울림@ 109동 1104호	031-443-5828
	강평수	전 (주)코레트신탭 대표이사	서초구 방배본동 781-18	02-536-7788
	김태현	현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처장	은평구 갈현동 308-56	02-352-9181
	박신욱	전 통계청 전남통계사무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37-10 삼호가든@104동501호	062-512-7737
	선주대	전 대한통계협회장	서초구 잠원동49-8 한신한강@ 2동 606호	02-536-2555
	송노익	전 국민체육진흥기금심의 위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61-1014	02-546-6036
	송양희	전 통계청서울통계사무소	서대문구 홍은3동,현대@202-604	02-3216-7865
	안재길	현 한국소비자보호원 부원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3 성원@ 703-402호	031-719-6230
	엄장희	현 한선정보(주) 대표이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26 유승@ 201동 704호	031-963-2360
	윤재중	전 농협중앙회연수원장	구로구 개봉본동 454-14	02-2612-5459
	이경의	현 (주)컴택 회장	관악구 봉천2동 41-117	02-875-0202
	이민형	전 한국인정원 원장	송파구 풍납동 508 한강극동@101동1202호	02-470-7270
	임성곤	전 통계청 통계연수원장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현 대아이파크 101-904	031-851-3548
	정재구	현 경기대학응용통계학 교수	금천구 시흥4동 5-13 삼익@ 103-2101호	02-894-3787
	주태섭	전 서울통계사무소장	마포구 도화동 357 현대@ 108동 1302호	02-3273-1147
	최돈철	전 한국GIS(주) 대표이사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성남마을 벽산체시빌Ⅱ504-101호	031-304-3152
감사	윤형백	전 통계청 인구통계과장 전 통계청 서울사무소장 현 한국통계진흥원전문위원	은평구 갈현1동 427-1번지	011-9700-6230
사무국장	김응구	전 통계청 사무관 현 한국통계진흥원 간사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세관 별관 103호) (사) 통우회	02-3444-4429

□ 입회 안내

- 회원은 off-line 또는 메일로 입회신청을 받사오니, 입회원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메일(webmaster@statob.or.kr)로 또는 Fax(02)3443-7957로 송부

- 회비납부안내
 - 가입회비 : 30,000원
 - 연 회 비 : 정회원 (30,000원)
임원 및 고문 (50,000원)
기관회원 -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함

 - 납부방법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통우회 은행계좌로 입금 또는 총회나 수시로 직접 납부

한국응용통계연구원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Korea Applied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7-26 (삼환까뮈별관 4층) 우 150-010
- 전 화 : 02-785-6070, fax : 02-785-5150
e-mail : kasri@chollian.net
- 홈페이지 : www.koris.org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설립일자 : 1970.10.10.
- 대표자 : 김효진
- 예 산 : 180,000만원(2008년)
- 인력(상근) : 24명

□ 설립목적

정치·경제와 기업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및 사회발전에 부응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통계인식 확대와 과학적인 통계이론 및 기법을 보급함

□ 주요사업

- 통계이론 및 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 경제·경영·환경 및 유통통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 사회여론 조사 및 분석연구
- 학술용역, 원가계산, 시장조사 및 물가조사 연구분석
- 기업경영진단 및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 통계자료의 컴퓨터처리 및 분석방법 개발연구
- 국내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집 및 교류
- 전기 각항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계몽선전 활동
- 정기간행물·자료집 및 도서의 출판간행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내외에 지원이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 부응하여 정치·경제·사회 및 기업경영의 통계정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확대와 통계이론·기법의 연구개발 및 정보화체계의 응용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통계이론 및 그 실천기법과 정보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2. 통계 정보의 전산처리 및 분석기법의 개발
3. 국내·외 각종 통계 정보의 수집·교류의 D/B화
4. 정치·경제·사회·경영·환경 및 유통에 관한 통계연구 및 조사분석
5. 시장조사(마케팅)·기업경영진단·원가계산·물가조사 등 학술 연구용역
6. 정보자료집·정기간행물 및 관련도서류의 출판 간행
7. 기타위임업무 및 전기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연구원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찬동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 (입회) 연구원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연구원의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구원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위배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회원) 연구원의 취지를 찬동하여 적극적인 협조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중 이사회 의결로써 명예 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연구원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1명 포함)
2. 감사 2명

제12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이사)

1.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연구원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며, 연구원의 재정현황과 사업진행 현황을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후임 임원의 선출 여부를 심의해야하며, 이때 그 후임자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고문, 자문 및 연구위원) 고문·자문 및 연구위원은 이사장이 추천·선임하여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수시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가장이 소집한다.
 -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감사가 요청할 경우
 - ④ 재적회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8조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해임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소집절차 및 의결)

1.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에 의사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회의의 주요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 임원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사회) 연구원의 업무를 추진·집행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22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중요사업 계획의 결정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소집절차 및 의결)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감사 및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조 직

제25조 (조직) 연구원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재정) 연구원의 재정을 다음 각호로 충당한다.

1. 찬조금 및 보조금
2. 사업수익
3. 기타 잡수익

제27조 (회계 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 (예산 편성 및 결산) 연구원은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사업 실적 및 결산내용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9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결의로 감독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산) 연구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연구원이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32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임원진 주소 및 연락처

직책	성명	주소	연락처
대표이사	김호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2-39 한양빌라3동 202호	02-447-4677
이사	이동표	서울시 도봉구 창동 581-74	02-908-2084
	신완영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933-103	051-469-6554
	최용집	대구시 달서동 이곡동 성서서한2차 103-705	053-254-9555
	김호일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419	055-242-0315
	최종국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95-1	02-7040-114
	이병일	의왕시 오전동230 성원1차@102-2003	031-453-6383
	오미희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에이스@202-906	031-917-3257
	민영광	서울시 강서구 등촌2동 365-195 두산@104	02-2637-6575
	이광수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7-18	02-357-8495
	염동식	서울시 강남구 도곡1동 934-10 우성@1-1111호	02-561-1266
감사	김용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광장@10-1006	02-780-5379
	이영우	원주시 중앙동 126-8	033-764-9918

한국통계조사연구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Korea Statistical Survey Institute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34 (성문빌딩 2층) 우.137-130
- 전 화 : 02)578-2556~9, Fax : 02)578-2588
e-mail : noveljky@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ossi.or.kr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설립일자 : 1990. 2. 1.
- 대표자 : 신 동 엽
- 예 산 : 125,700만원(2007년)
- 인력(상근) : 27명

□ 설립목적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정치,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전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국가경제발전 시책에 기여하고, 통계수요에 대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연구기법을 개발 보급함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여 기업의 시장경제발전에 기여함

□ 주요사업

- 경영 진단, 지도, 각종 여론조사, 통계조사 및 통계적 경영기법 보급
- 사회, 경제, 경영, 환경 등 사회과학분야의 이론적 연구 및 조사 분석
- 국내외 경제동향분석 및 각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학술발표, 토론회개최, 강연회개최
- 국가경제정책의 학술연구 및 실증적 분석
- 정부회계제도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의 연구조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용역
- 정부,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위촉 받은 각종 공공요금, 요율산정, 타당성조사 및 합리화방안 연구
-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
-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의한 개발비용 산정 업무
- 정보통신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연구, 도서출판
- 각종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식산업의 보급, 교육, 인제육성
- 교통환경 및 교통량 조사, 환경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용역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본 연구소는 사단법인 한국통계조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연구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 적) 본 연구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정치, 경제, 경영 등 사회 과학 전 분야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 시책에 기여하고, 통계수요에 대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연구기법을 개발 보급함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을 기하여 기업의 시장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영 진단, 지도, 각종 여론조사, 통계조사 및 통계적 경영기법 보급
2. 사회, 경제, 경영, 환경 등 사회과학분야의 이론적 연구 및 조사분석
3. 국내외 경제동향분석 및 각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정보교류, 세미나 개최, 학술발표, 토론회개최, 강연회개최
4. 국가경제정책의 학술연구 및 실증적 분석
5. 정부회계제도 및 계약에 관한 법률의 연구조사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용역
7. 정부, 공공기관, 기업으로부터 위촉 받은 각종 공공요금, 요율산정, 타당성조사 및 합리화 방안연구
8.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업무’
9.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의한 ‘개발비용 산정 업무’
10. 정보통신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연구, 도서출판
11. 각종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식산업의 보급, 교육, 인재육성
12. 교통환경 및 교통량 조사, 환경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용역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연구소와 유관한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정회원 자격

정회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일반회원 자격

연구소의 관련업무 및 제 분야에 관심이 지대한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으로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

3. 특별회원 자격

특별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 연구소 발전에 기여하여 이사회 결의로 추천된 인사

제 7 조(입 회)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 입회코자하는 자 및 기관은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결과의 자료제공, 교육 및 기타 부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 9 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연구소의 취지와 목적을 위배하거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일이 있을 시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구성)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장 : 1인

이 사 :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및 소장 포함)

상임이사 : 3인 이내 (상무이사 포함)

감 사 : 2인 이내

제 11 조(이사선임) 이사는 본 연구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기대할 수 있는 자를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 12 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 13 조(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상무이사) 상무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하며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 15 조(감 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본 연구소의 재정상황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선임되며 본 연구소 연구업무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제 17 조(연구위원) 연구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 선임되며 본 연구소 연구업무를 수행 지도한다.

제 18 조(임원의 임기)

1. 본 연구소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그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선임해야 하며 보궐 선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9 조(회의의 종류)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 개최한다.

제 20 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예산,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1 조(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

1. 총회의 소집은 일주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임원 선출은 회원만이 의결권을 갖는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 22 조(총회의 회의록)

1.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서는 회의의 의결사항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3 조(이사회) 본 연구소의 업무를 추진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이사들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제 24 조(이사회 구성)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상무이사외 비상근 이사를 두고 이사장 및 소장도 이에 포함한다.

제 25 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
2.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3. 중요사항 계획의 결정과 월별 집행계획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6 조(이사회 소집과 의결)

1.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과반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이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 6 장 집 행 기 관

제 27 조(집행기관) 본 연구소의 업무는 이사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며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 28 조(조직과 기능)

1. 본 연구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둔다. 단, 필요한 부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2. 부서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3. 본 연구소의 필요한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각 부서의 업무분담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자 산 및 회 계

제 29 조(경 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본자산에서 나오는 수익금
3. 연구지도 수입
4. 보 조 금
5. 기타수입

제 30 조(자산의 종류)

1. 본 연구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항에 열거된 것으로 하되 이것을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가. 별지의 재산목록 등 기본 재산으로 기재된 자산
 - 나.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자산 : 이억일십일만원 (200,110,000원)
 - 다.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의결한 자산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 31 조(경비지출) 본 연구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 32 조(재산의 관리) 본 연구소의 재산은 이사장이 관리한다.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 33 조(현금보관) 재산 중에서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공채 또는 유가증권으로 환급하여 보관한다.

제 34 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에 이월 시키던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야 한다.

제 35 조(예산 결산)

1. 본 연구소의 매년도의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전에 년말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이사회 의결을 한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6 조(특별회계) 본 연구소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37 조(수익금의 사용) 전조의 특별회계에서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모두 이것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 38 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 끝난다.

제 8 장 부 칙

제 39 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40 조 본 정관의 규정 외에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본정관은 2007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한국통계조사연구소 임직원 주소 및 연락처

직 책	성 명	연락처	주 소
이사장	신동엽	010-3758-4722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2 아름마을 건영A 110-304호
회 장	이창일	011-711-3820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409-178 대신빌라 302호
소 장	송병옥	011-331-8631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동 LG자이 APT 2차 206-1802호
감 사	최종열	010-7794-8899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74-64
이 사	전광열	011-448-476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0 (16/3) 장미마을 코오롱아파트 118동 807호
이 사	김훈정	017-214-5530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65-30 3층
이 사	김응석	011-407-9853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642-3번지 새봄빌딩 2층
이 사	신원식	011-250-2736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14-2 202호
이 사	남영일	010-7337-5809	인천시 남동구 구월 3동 1348-9
이 사	서병석	011-9735-3880	서울시 서초구 방배4동 방배1차 현대아파트 105-1401호
연구위원	김수일	011-272-686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56 시영아파트 20동 313호
연구위원	유한중	017-270-450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429 (10/1)
실 장	구 회	011-9244-2002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266번지 3주공A 303동 303호
실 장	조성호	011-207-812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70-1 (20/5)
실 장	김진겸	011-721-1508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6번지 밝은햇살A 702호

직 책	성 명	연락처	주 소
실 장	이세우	011-244-3460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260 이화우성A 102동 702호
실 장	김석기	011-255-7446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9-16 브라운스톤방배아파트 103-1402
부 장	추창용	010-2780-1442	경기 시흥 은행 549-1 대우A 302-507호
차 장	신권호	010-8993-1180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240-1 삼성아파트 7-1206
차 장	김승기	017-288-98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93-7 금성그린빌라 402호
차 장	한대희	010-8866-445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880 우림홀인원APT 204-1404
과 장	홍순재	017-719-895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1-4 301호
과 장	이재준	010-7322-544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52-2 삼광빌라 3동 302호
과 장	최순호	011-9822-525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54번지 신성하이네스트 220호
과 장	석진용	017-343-451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 월드A 112-406호
과 장	이기용	017-324-7061	서울시 관악구 봉천10동 56-109호(201호)
과 장	목인균	010-2269-993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8-12
총 무	신명희	010-2322-066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59번지 청구아파트 103-1106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Korea Social Research Center(KSRC)
- 주 소 : 광주시 남구 월산5동 1022-44 월산빌딩 401호(우 503-82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7-15 제임스빌딩 B101호(우135-080)
- 전 화 : 062-362-0778, Fax: 062-361-2529
e-mail : ksrc@dreamwiz.com
- 홈페이지 : <http://www.ksrc.or.kr> (webmaster : 이강웅)
- 창립일 : 2004. 3. 5. (법인등록 : 2004. 4. 13.)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인력(상근) : 8명
- 회원
 - 연구위원 : 135명

□ 설립목적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Korea Social Research Center)는 우리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축적 및 분석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과학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각종 자료들을 축적하고, 사회문제를 진단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연구 및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서 창립하였습니다.

□ 주요사업

1.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자료은행 운영
2. 통계 및 조사 관련 전문 서적의 개발
3. 통계자료집 및 기타 연구도서의 출판 및 판매
4. 회지(회보) 및 학술지 간행
5. 학술회의 개최
6. 학술상 운영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사업 수행
8. 통계 및 조사연구 발전과 관련된 교육사업(워크샵 및 연수생 교육 등) 수행

定 款

제정 2004. 3. 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2. 연구소의 영문표기는 “Korea Social Research Center(약칭 KSRC)”로 한다.

제2조 (목적) 연구소는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설립이념과 법통을 이어 받아 한국사회의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연구 및 학문간의 연계적 학술활동을 통하여 정보와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1. 연구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광주광역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의 명칭은 지역명을 넣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광주광역시지부”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사회의 발전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자료은행 운영
2. 통계 및 조사 관련 전문 서적의 개발
3. 통계자료집 및 기타 연구도서의 출판 및 판매
4. 회지(회보) 및 학술지 간행
5. 학술회의 개최
6. 학술상 운영
7.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사업 수행
8. 통계 및 조사연구 발전과 관련된 교육사업(워크샵 및 연수생 교육 등) 수행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재산) 연구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연구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추진위원들이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민간단체·개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
 -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공공단체·민간단체·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및 건물
 - ④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2.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재산의 관리)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영재원) 1. 연구소의 운영재원은 회원이 내는 회비, 특별회비, 후원회비, 자료회비, 기탁금, 용역위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 및 자료회비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예산편성) 연구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3장 회 원

제11조 (회원) 연구소의 회원은 특별회원과 일반회원, 후원회원 및 자료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주요기관의 장이나 주요임무를 맡은 사람 또는 사

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연구소의 취지에 찬동하고 연구소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람(또는 단체) 가운데, 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가입을 의결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일반회원) 학계 및 전문가들 가운데 연구소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 (후원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을 제외하고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또는 단체) 가운데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사람(또는 단체)으로 한다.

제15조 (자료회원)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회지와 출판물 등을 받아 보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회원 정수)

1. 일반회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3. 후원회원과 자료회원은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2. 1년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4. 회원은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5. 회원은 연구소가 간행하는 회지와 출판물을 받고 연구 사업 과정에서 생겨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회원은 연구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다.
7. 회원은 연구소의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이사회

제18조 (임원의 정수)

1. 연구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 1인
 - ②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 ③ 감사 2인

2. 모든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장을 맡은 이사는 상근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

1. 설립 당시의 이사는 발기인 회의에서 선출한다.
2. 이사 가운데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3. 이사 구성원 가운데 민법 제 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재적임원 1/3을 초과할 수 없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결의 또는 연구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이사장)

1. 이사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감사)

1.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
2. 감사는 재산상태와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1.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선임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상당한 기간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해임)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 및 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소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24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 및 고문의 선임 및 해임
2. 주요 사업계획 및 그 변경
3. 예산 및 결산
4. 정관의 변경
5. 중요규정의 제정 및 개발
6. 중요재산의 처분
7. 연구소의 해산 및 명칭 변경
8.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9. 기타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26조 (이사회 의사결정)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임원의 해임과 연구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 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임시이사회는 소장, 감사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4. 각 회의의 불참자는 위임자를 지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 ① 서면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서면결의는 우편 또는 전송(팩스)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 (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과 임무

제28조 (소장)

1.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
2. 소장은 이사 가운데 이사장이 선임한다. 단, 이사장이 겸할 수 있다.

3. 소장은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 (부소장)

1. 연구소에 2인 이내의 부소장을 둘 수 있다.
2. 부소장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3.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고문)

1. 연구소에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사회적 명망가로서 연구소에 공헌이 큰 사람 가운데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 (직제) 연구소의 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직원)

1. 연구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 (연구위원회)

1. 연구소에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위원은 중앙·지방·해외의 학자,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 (과제연구회)

1. 연구소에 부과된 과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외부의 연구인력(이하 “객원 연구위원 등”이라 한다)을 활용하는 과제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과제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정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 (객원연구위원 등)

1. 객원연구위원 등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및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소장이 위촉한다.
2. 객원연구위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은 연구소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 (정관의 변경) 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규정의 제정)

1. 연구원의 직제·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이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서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이를 정한다.

제38조 (해산)

1. 연구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소가 해산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부 칙

1.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의 효력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법인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발생한다.
2. (경과조치) 연구소는 다음의 항을 포함하여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법통을 비롯한 모든 것을 승계한다.
 - ① (사업년도) 연구소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인가일로부터 당해 년도말까지 한다.
 - ② (조직과 임무) 조직과 임무는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조직과 임무를 승계한다.
 - ③ (회원) 회원은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의 회원을 승계한다.
 - ④ (사업) 사단법인 광주사회조사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승계한다.
3.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학술지

<사회연구(Korean Journal of Social Issues)>

- 2000년 창간, 년 2회 발간(4, 10월), 통권 (2008년 4월) 15호, 국문지
- 2005년에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사회연구』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사회과학의 발전과 그 연구결과의 대중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은 전문 연구자와 교양있는 일반 독자를 연결함으로써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사회연구』의 훌륭한 필진을 발굴함과 동시에, 학문후속세대에 해당하는 젊은 연구자들의 학문연구를 자극하고 그들의 연구성과를 사회적 지식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회연구』 학술상을 제정하였습니다.
- 『사회연구』 논문 양식, 논문 제출 안내, 논문 기고 요령은 홈페이지 (<http://www.ksrc.or.kr/~socialissues/>) 참고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임원 명단

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종 학력	약력	임기
이사장	김재오	510201-100232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일신아파트 105동 303호	Univ. of Iowa 경영학박사	호남대학교 관광경영대학 교수	4년
이사	김순홍	541009-104192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101동 1407호	Univ. of Iowa 사회학박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4년
이사	양철호	550721-102472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494 솔피REX-K1-1603호	Michigan State Univ. 사회학박사	동신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4년
이사	김경호	591104-15586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08-1 신가부영아파트 103동 803호	Univ. of Birmingham 행정학 박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년
이사	최준영	570819-1551713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삼익아파트 109동 204호	Univ. of Iowa 사회학박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4년
감사	이대용	570907-1552121	광주시 남구 봉선동 금호타운아파트 3동 1501호	Univ. of Iowa 경영학박사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년
감사	김동일	531008-1560015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봉선동 469-5 금호타운아파트 3동 203호	세무사	세무사	2년

□ 입회안내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자료회원이 되시면 누구나 저희 연구소의 조사결과 Data Base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원등급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기·비정기 간행물 및 신간도서 소식을 전자우편 (e-mail)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가입일로부터 1년, 일반회원 제외)	
일반회원 (회비: 없음)	▶ 혜택 : 조사DB 열람
실버회원 (회비: 연 10만원)	▶ 혜택 - 『사회연구』(각권 정가 10,000원, 년 2회 간행) 제공 - 조사결과표 열람, 원자료(raw-data) 다운로드 (청소년자료 제공) - 통계 자문 및 분석 의뢰시 30% 할인 * - 도서 구입시 30% 할인 * - 『사회연구』 논문게재 심사료 및 게재료 50%할인 * - 『사회연구』 학술상 응모 심사료 및 게재료 면제 *
골드회원 (회비: 연 20만원)	▶ 혜택 - 『청소년생활통계연보』 및 『한국 청소년의 삶과 의식구조』 제공 - 『사회연구』(각권 정가 10,000원, 년 2회 간행) 제공 - 조사결과표 열람, 원자료(raw-data) 다운로드 (청소년자료 제공) - 통계 자문 및 분석 의뢰시 50% 할인 * - 도서 구입시 50% 할인 * - 『사회연구』 논문게재 심사료 및 게재료 면제 * - 『사회연구』 학술상 응모 심사료 및 게재료 면제 *
* 표시가 붙은 혜택은 해당 회원 자격을 얻고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적용됩니다.	
○ 가입문의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전화 062-362-0778, 팩스 062-361-2529 http://www.ksrc.or.kr ksrcpress@dreamwiz.com	

한국행정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 광화문쌍용플래티넘 1609호
(사)한국행정학회 (우) 110-052
- 전 화 : 02-736-4977 (오지은 사무국장), Fax: 02-738-2190
e-mail : kapa21@kapa21.or.kr
- 홈페이지 : <http://www.kapa21.or.kr>, webmaster : kapa21@kapa21.or.kr
- 창립일 : 1956. 10. 12. (법인등록 : 1994. 11. 2)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예 산 : 200,000만원 (2004년)
- 인력(상근) : 3명 (사무국장 1명, 간사 2명)
- 회원
 - 정 회 원 : 1,488 명
 - 준 회 원 : 137 명
 - 기관회원 : 150 개

□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원리를 연구조사하여 한국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정관 제1장 제2조(목적)>

□ 주요사업

1. 행정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개최
2. 학회지의 발간
3. 행정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4. 행정학 교육프로그램연구
5. 행정학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定 款

제정 1994. 11. 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원리를 연구조사하여 한국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社團法人 韓國行政學會”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번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행정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학회지의 발간
3. 행정문제에 관한 정책연구
4. 행정학 교육프로그램 연구
5. 행정학 관련 자료수집 및 편찬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5인 (이사장 1인 포함)
감사 2인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5 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 ③ 제 2 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 2 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 22 조 (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 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 조 (서면 의결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27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와 같다.

제 28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27 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9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30 조 (경비의 조달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31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입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32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33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34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행정학회 임원진 명단

직위	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주소
회장	남궁근	서울산업대학교	02-970-6261	keunnk@snut.ac.kr
차기회장	이대희	광운대학교	02-940-5335	nulbo@hanafos.com
부회장	김인철	한국의국어대학교	02-2173-3180	kimic@hufs.ac.kr
	강성철	부산대학교	051-510-2107	kangsc@pusan.ac.kr
	오세운	호남대학교	062-940-5243	syoh@honam.ac.kr
	김복규	계명대학교	053-580-5417	bkk194@kmu.ac.kr
	김영호	행정안전부	02-2100-3100	yhkrnhk@mopas.go.kr
이사	김상묵	서울산업대학교	02-970-6495	smook@snut.ac.kr
	조승현	전북대학교	063-270-3878	cho2514@chonbuk.ac.kr
	신현중	한남대학교	042-629-8324	phjshin@hannam.ac.kr
	문유석	경성대학교	051-620-4521	yumoon@ks.ac.kr
	박홍식	중앙대학교	02-820-5446	hspark@cau.ac.kr
	김재훈	서울산업대학교	02-970-6492	jhkim@snut.ac.kr
	최승범	한경대학교	031-670-5243	senchoi@hanmail.net
	정광호	서울대학교	02-880-5626	kwjung77@snu.ac.kr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02-2007-0590/0591	pjunghoon@kipa.re.kr
	한세억	동아대학교	051-240-2712	sehan@donga.ac.kr
	조경호	국민대학교	02-910-4431	khcho@kookmin.ac.kr
	김태영	경희대학교	02-961-0493	tykim@khu.ac.kr
	이영범	건국대학교	02-450-3574	yblee97@paran.com
	박영미	초당대학교	061-450-1563	ympark@chodang.ac.kr
	문명재	연세대학교	02-2123-2959	mjmoon@yonsei.ac.kr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02-3277-2754	clcho@ewha.ac.kr
	구교준	고려대학교	02-3290-2286	jkoo@korea.ac.kr
	황영호	군산대학교	063-469-4462	yhwang@kunsan.ac.kr
	성도경	영남대학교	053-810-2658	dksung@ynu.ac.kr
	박종관	백석대학교	041-550-0697	633127@hanmail.net
	심준섭	중앙대학교	02-820-5833	jsshim@cau.ac.kr

직위	성명	소속	전화	이메일 주소
이사	김영미	상명대학교	02-2287-5212	young@smu.ac.kr
	이재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02-1566-0133	jaewon@pknu.ac.kr
	김정수	한양대학교	02-2220-0833	CoramDeo@hanyang.ac.kr
	조선일	순천대학교	061-750-3712	seonil@sunchon.ac.kr
	최영출	충북대학교	043-261-2203	ycchoi@chungbuk.ac.kr
	임승빈	명지대학교	02-300-0667	lim0816@hanmail.net
	최진욱	고려대학교	02-3290-2285	jinchoi@korea.ac.kr
	이근주	이화여자대학교	02-3277-4062	geunjoo@ewha.ac.kr
	이승중	서울대학교	02-880-8546	slee@snu.ac.kr
	전영평	대구대학교	053-850-6172	ypchun11@hanmail.net
	조성한	중앙대학교	02-820-5512	johanju@cau.ac.kr
	하연섭	연세대학교	02-2123-2966	hays@yonsei.ac.kr
	권경득	선문대학교	041-530-2524	kdkwon@sunmoon.ac.kr
	강제상	경희대학교	02-961-9354	jskang@khu.ac.kr
	오철호	숭실대학교	02-820-0517	coh@ssu.ac.kr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02-2173-3106	jhufs@hufs.ac.kr
김영호	중앙인사위원회	02 -751-1105~6	yhkmhk@csc.go.kr	
정남준	행정자치부	02-2100-3400	njchung@chol.com	
감사	이영남	관동대학교	033-649-7332	ynlee@kwandong.ac.kr
	하정봉	계명대학교	053-580-5433	hjungbong3@hanmail.net

한국사회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 주 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304-28 사단법인한국사회학회 (우) 110- 054
- 전 화 : 02-722-8747, Fax: 02-722-8746, e-mail : admin@ksa.re.kr
- 홈페이지 : <http://www.ksa.re.kr>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설립일자 : 1956.10.24
- 대표자 : 임희섭
- 예 산 : 470,000 천원(2008년)
- 인력(상근) : 1명

□ 설립목적

국내외 사회학자간의 긴밀한 제휴하에 국내 사회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 전문적 지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

□ 주요사업

- 년 2회 전·후기 사회학대회 개최
- 년 2회 특별심포지움, 기획학술세미나 개최
- 학회지 『한국사회학』 연 6회 발행
- 연구발표회 및 학술연구사업
- 학회소식지 연 4회 발행
-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및 협조

定 款

1957. 5. 5 제정
1964. 12. 7 1차 개정
1970. 5. 2 2차 개정
1983. 7. 9 3차 개정
1989. 6. 29 4차 개정
1991. 6. 29 5차 개정
1992. 6. 19 6차 개정
1992. 12. 5 7차 개정
1994. 6. 22 8차 개정
2001. 6. 22 9차 개정
2007. 6. 22 10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회학연구 및 문화진흥활동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발전에 기여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社團法人 韓國社會學會”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4-28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사업연구
2. 학회지의 발간
3.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 및 협조
4. 사회학적 관점의 문화예술 교류 및 정책 연구

②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 임대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시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의결로써 이사가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5인 (이사장 1인 포함)
2. 감 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 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의결 재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의결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① 제 27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항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 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회계 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구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7 장 보 칙

제3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 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9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병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김 일 철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105-11	4년
이 사	김 경 동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03-1489	4년
이 사	임 희 섭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3가 135 삼익APT 1-707	2년
이 사	이 동 원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9	2년
이 사	전 병 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APT 5-102	4년
이 사	유 도 진	서울시 강남구 을현동 324-3	2년
이 사	최 순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1	1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학회지

자료명	창간년도	연간 발간횟수	비고
한국사회학 (Korean Journal of Sociology)	1964	6회 (2.4.6.8.10.12.)	2001년 하반기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로 선정

○ 『한국사회학』 원고제출 및 게재절차

- 『한국사회학』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지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논문게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보냅니다.
 - 나. 편집위원회는 기고된 원고가 아래의 ‘원고작성 요강’에 맞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부합니다.
 - 다.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필자는 한국사회학회에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편집위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e-mail : ksaj@kangwon.ac.kr
 - * 주 소 : (200-701)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이기홍 교수 연구실 내 『한국사회학』 편집위원회
 - * 전 화 : 033-250-6868

□ 학술행사 (2006년 이후)

개최일자	행 사 명	개최장소
2006.3.29	2005년 국제학술대회 “탈근대사회와 노마디즘”	서울대학교
2006.3.30	기획연속포럼-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중 제1차포럼 “중산층 확대와 양극화의 해법”	서울대학교
2006.5.3	기획학술심포지움-“지역사회 공동 성장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2006.5.12	기획연속포럼-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중 제2차포럼 “한국의 중산층, 개혁적인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6.6.9	언론학회와의 공동심포지움 “정보화시대: 새로운 삶과 문화의 지평”	중앙대학교
2006.6.15~6.16	2005년도 전기사회학대회 “변화하는 한국사회:한국사회학, 무엇을 할 것인가”	전북대학교
2006.9.21	기획연속포럼-중산층의 역할과 사회발전 중 제3차포럼 “중산층과 한국의 사회통합”	부산 그랜드호텔
2006.9.22	경기문화재단과의 기획공동학술대회 “고령화 사회와 효 가족 문화”	일산 KINTEX
2006.9.28~9.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공동 국제학술회의 “The Global Futures of World Regions: The New Asias and the Vision of East Asian Sociology”	쉐라톤 워커힐 호텔
2006.10.19~10.20	한국여성개발원과의 공동 특별심포지움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프레스센터
2007.4.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의 공동 학술대회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Adolescence”	프레스센터
2007.6.22	한국사회학회 창립50주년 기념식	이화여자대학교
2007.6.22~23	2007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이화여자대학교
2007.9.4	특별 심포지움 “IMF체제의 사회분화를 넘어서 통합사회로”	전국은행연합회관
2007.9.13~14	국제학술회의 “Diversity and Dynamics of Globalization: Socio-Economic Models in Global Capitalism”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007.12.14~15	2007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세계화, 통일, 일상의 민주화”	강원대학교
2008.5.16	건국60주년 기념 한국사회학회 특별심포지움 “한국사회:어제, 오늘, 내일”	전북대학교
2008.6.20~6.21	2008년도 전기사회학대회 “세계속의 한국, 한국속의 세계”	경북대학교

2008년 한국사회학회 임원명부 및 연락처

지위	성명	연락처	소속	e-mail
회장	홍두승	010-3265-6414	서울대 사회학과	dshong@snu.ac.kr
부회장	양영진	011-9765-4389	동국대 사회학과	yjyang@dongguk.edu
"	김규원	010-3032-5225	경북대 사회학과	sockim@knu.ac.kr
당연직이사	전태국	019-461-6229	강원대 사회학과	tkjeon@kangwon.ac.kr
"	김문조	011-287-6993	고려대 사회학과	muncho@korea.ac.kr
"	배규한	011-9864-9842	국민대 사회학과	khbae@kookmin.ac.kr
"	윤정로	010-7300-4625	KAIST 인문사회과학부	jryoon@kaist.ac.kr
"	이기홍	010-8790-0725	강원대 사회학과	yikihong@kangwon.ac.kr
총무이사	장택진	011-9903-3996	서울대 사회학과	dukjin@snu.ac.kr
"	전상진	019-9144-3732	서강대 사회학과	sachun@sogang.ac.kr
"	배영	017-710-7653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ybae@ssu.ac.kr
"	김신영	011-616-4895	한양사이버대	kimsy@hycu.ac.kr
"	이택면	010-8003-9826	여성개발원	onbike@hanafos.com
연구이사	김미숙	019-420-8296	청주대 사회학과	miskim@chongju.ac.kr
"	한준	016-721-1111	연세대 사회학과	joonhan@yonsei.ac.kr
"	서우석	019-228-4600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usseo@uos.ac.kr
"	이기홍	010-3725-0171	한림대 사회학과	gihongyi@hallym.ac.kr
섭외이사	정학섭	017-654-2922	전북대 사회학과	hark@chonbuk.ac.kr
"	김혜순	016-9750-5422	계명대 사회학과	khs@kmu.ac.kr
"	이명진	016-281-0326	고려대 사회학과	leemj@korea.ac.kr
"	최셋별	011-9633-2961	이화여대 사회학과	choseta@ewha.ac.kr
국제이사	온만금	010-5779-6820	육사 정치사회학과	mgohn@kma.ac.kr
"	김동노	011-506-6193	연세대 사회학과	donkim@yonsei.ac.kr
"	김병조	010-5084-2181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bjkk@kndu.ac.kr
"	신동준	016-413-4890	계명대 경찰학부	djshin@kmu.ac.kr

□ 입회안내

○ 회원의 구분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사회학 또는 인접과학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다.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크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원로회원은 20년이상 회원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원로회원은 회비면제를 받는다.
-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회장단으로 구성된 회원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사회 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가 간행하는 회지를 받고 또 이에 투고할 수 있다.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 회비납부 안내

- 정 회원

개인회원 : 입회비 10,000원.

연 회 비 : 석사학부졸업 20,000원 / 비전임 40,000원 / 전임 60,000원

단체회원 :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100,000원.

기관회원 :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300,000원.

한국계량경제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조장옥 교수)
- 전 화 : 02-705-8515, FAX: 02-704-8599, e-mail : keconmts@gmail.com
- 홈페이지 : <http://www.es.re.kr>
- 창립일 : 1986. 12. 6. (법인등록 : 2000. 4. 27.)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예 산 : 57,560,528원 (2008년)
- 인력(상근) : 없음(사무국장 및 조교가 업무수행)
- 회원
 - 정 회 원 : 550여명
 - 기관회원 : 24개

□ 설립목적

계량 및 수리적 방법을 써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을 고무·지원함으로써 이론·실증 양면에서 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1. 연 2회의 하·동계 학술대회 개최
2. 『계량경제학보』지의 간행
3. 세계계량경제학회 극동학술대회 개최
4.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학회소식지 연 2회 발간
5. 미시·거시·계량 분과의 3개 연구회 매달 개최

□ 사업실적

2007년 하계 학술대회는 한국계량경제학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경제학자들을 잇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경제학자들과 함께하는 학술대회로 추진되었습니다. 각 분과별로 9편씩의 논문과 Plenary Session에서 1편의 논문 등 무려 28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이어 한국계량경제학회가 주최한 2008년 하계 학술대회에는 미시, 계량 분과 8편씩, 그리고 거시 분과 6편을 포함하여 각 분과별 Invited Session에서 1편씩 총 25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발표자와 주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es.re.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8년 2월 20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공동학술대회에서 저희 학회는 미시 거시 분과 회의에서 4편 및 계량 분과 회의 1,2에서 각각 3편 총 10편의 논문들을 발표 하였습니다

定 款

제정 2008. 6. 16.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계량경제학회(The Econometric Society, 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계량 및 수리적 방법을 써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을 고무·지원함으로써 이론·실증 양면에서 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정기학술발표회
2. 정기·부정기의 학술지 발간
3. 정기·부정기의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타기관과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 대학 또는 관련기관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경제학 및 인접분야에서 석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량 및 수리적인 방법을 써서 이론적 및 실증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자.

2. 준회원

해당분야의 대학원 재학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

3.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제7조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1. 회원의 가입은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총회(이하 “총회”라 함)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원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다.
3.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 행사에서 본회를 대표할 수 있다.
4. 회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범위 내에서 회장과 본인의 합의하에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연회비) 연회비의 액수 및 징수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편집이사 2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법정 등록이사를 겸한다.
2. 임원 중에 약간명은 상임이사가 된다. 상임이사는 보수를 얻는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단, 본회의 특성에 비추어, 경제학 분야의 교수는 상임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선출)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회장과 사무국장은 상임이사 된다.

3. 형 집행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 후 연 임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기임원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고 전임 회장은 차기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소집권을 갖는다.

제13조 (임원 권위시 보충) 임원이 임기 중 권위될 경우 회장이 후임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선정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권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재무를 관리하고,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본회가 계획하고 수행하는 제반 사업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4. 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기타 연구 자료의 발간사업을 수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6-8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총회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회장은 또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다.

1.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 결산서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연 2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 에는

회장이나 감사 또는 이사 3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2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특별회비
3. 기금
4. 기타 수입

제25조 (기금) 본회는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결산) 본회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

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본회의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을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 (서면결의)

1. 총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한다.
2. 이사회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2008년 한국계량경제학회 임원 명단 및 연락처

직위	성명	소속	e-mail	연락처	비고
회장	조장옥	서강대	chojangok@sogang.ac.kr	02-705-8769	
부회장	전병헌	고려대	bhjun@korea.ac.kr	02-3290-2213	
감사	김인무	성균관대	inmookim@skku.edu	02-760-0433	
감사	오성환	서울대	shoh@plaza.snu.ac.kr	02-886-4231	
사무국장	이영훈	서강대	yhnlee@sogang.ac.kr	02-705-8772	
사무차장	전현배	서강대	hchun@sogang.ac.kr	02-705-8515	
당연직 평의원	윤석범	연세대	sbyoon@yonsei.ac.kr	02-2123-3561	
	안충영	중앙대	cyahn@cau.ac.kr	02-820-5490	
	정기준	서울대	kjjeong@plaza.snu.ac.kr	02-880-6370	
	정현식	성균관	ChungHS@skku.edu	02-760-0423	
	한성신	연세대	sshan@yonsei.ac.kr	02-2123-2471	
	표학길	서울대	pyohk@plaza.snu.ac.kr	02-880-6395	
	윤창호	고려대	chyoon@korea.ac.kr	02-3290-2208	
	이도성	서강대	dosung@sogang.ac.kr	02-705-8511	
	이승훈	서울대	shoonlee@snu.ac.kr	02-880-6369	
	안국신	중앙대	ksahn@cau.ac.kr	02-820-5497	
	이지순	서울대	jisoon@snu.ac.kr	02-880-6476	
	유병삼	연세대	bsyoo@yonsei.ac.kr	02-2123-2488	
	변형운	서울대	sies@sies.re.kr	02-598-4652	
	윤정열	이화여대	jyyun@mm.ewha.ac.kr	02-3277-2775	
	박원암	홍익대	wapark@wow.hongik.ac.kr	02-320-1713	
	김완진	서울대	wjkim@snu.ac.kr	02-880-6378	
박준용	성균관대	jpark@tamu.edu	02-3277-2770		
계량경제 학보편집 위원장	이명재	고려대	myoungjae@korea.ac.kr	02-3771-0029	

직위	성명	소속	e-mail	연락처	비고
평의원	고상원	KISDI	sangwon@kisdi.re.kr	02-570-4130	
	김민경	통계청	mkkim@nso.go.kr	042-481-2523	
	김상택	이화여대	sangkim@ewha.ac.kr	02-3277-2772	
	김영산	한양대	ecyskim@hanyang.ac.kr	02-290-1021	
	김태완	동의대	taewan@deu.ac.kr	051-890-1413	
	남일총	KDI국제정책대학원	icnam@kdischool.ac.kr	02-3299-1183	
	류재우	국민대	lryoo@kookmin.ac.kr	02-910-4524	
	백경환	성균관대	khbaik@skku.edu	02-760-0432	
	손용엽	전남대	yysohn@chonnam.ac.kr	061-530-1549	
	신관호	고려대	khshin@korea.ac.kr	02-3290-2220	
	왕규호	서강대	ghwang@sogang.ac.kr	02-705-8699	
	원동철	아주대 경영대학	dcwon@ajou.ac.kr	031-219-2708	
	이봉호	서울여대	bhl@swu.ac.kr	02-970-5525	
	이우현	경희대	wrhee@khu.ac.kr	02-961-0774	
	이종건	한국은행동향분석팀	jklee@ssu.ac.kr	02-759-4181	
	전성인	홍익대	sjun@hongik.ac.kr	02-320-1808	
	정진욱	연세대	jinook@yonsei.ac.kr	02-2123-2493	
	정희택	한동대	htchung@handong.edu	054-260-1403	
	최병선	서울대	bschoi12@snu.ac.kr	02-880-6394	
	황윤재	서울대	whang@snu.ac.kr	02-880-6362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serihws@seri.org	02-3780-8036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inhak@keri.org	02-3771-0029		

한국응용경제학회

□ 일반현황

- 영문명칭 : The 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우) 456-756
유 향 근 교수
- 전 화 : 02-515-1014, FAX: 02-515-3256, e-mail : hangryu@cau.ac.kr
- 홈페이지 : <http://www.kaae.or.kr>
- 창립일 : 1999. 3. 13. (법인등록 : 2003. 12. 16.)
- 법인성격 : 사단법인
- 인력(상근) : 없음(사무국장 및 조교가 업무수행)
- 회원
 - 정 회 원 : 300명
 - 기관회원 : 5개

□ 설립목적

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론과 현실의 균형적인 시각을 접목시켜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과거 경제학이 지나친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현실 경제와의 균형발전을 주 관심사로 한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많은 경제연구소의 본 학회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 주요사업

- 연 1회의 정책세미나 개최
- 한국경제학회에서 주관하는 공동학술대회에 참여
- 연 1회의 정기학술대회 개최
- 『응용경제』지의 간행 (연3회)
- 월례발표회 매달 개최
- 외국 석학의 초청 강연 개최
- 남산 학술상 시상 (응용경제투고 논문 중 최우수작)

定 款

제 정 : 1999년 3월 13일

1차 개정 : 2003년 3월 21일

2차 개정 : 2003년 8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응용경제학회(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KAAE)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는 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다양한 논제들을 현실과 이론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발표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회는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응용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연구 및 발표
- ② 학회지의 발행
- ③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 ④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제 2 장 회 원

제 5 조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

가. 국내외 대학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경제학 및 연관되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나. 국내외 공·사립기관 또는 연구원(소)에서 경제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정부 경제부처의 과장급, 민간연구원(소)의 이사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라. 위의 가, 나, 다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

② 준회원

가. 대학원생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 경제학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기관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

④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제 6 조 본 학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본 학회의 학회지를 배부받으며 기타 본 학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③ 정회원은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탈퇴를 통보함으로써 학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제명, 경고 등 회원에 대한 모든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그 소집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정기총회를 매년 2월에서 3월 중에 1회 소집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은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정관이 정한 사항의 의결

③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④ 회장의 선출

- ⑤ 감사의 선출
- ⑥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 ⑦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
- ⑧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
- ⑨ 기타 상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제 11 조 총회의 의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은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학회의 해산에 대한 의결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정회원은 출석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서면 총회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③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회장 또는 회원은 의결권을 상실한다.

가. 학회와 회장 또는 학회와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기 구

제 12 조 본 학회의 기구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와 이사, 운영위원회, 감사, 사무국과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학술대회위원회와 학술대회위원장 및 위원,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3 조 본 학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4 조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회를 소집하여 총회를 사회한다.
- ④ 이사회의 구성권을 갖는다.

⑤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권한.

제15조 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6조 부회장의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1인의 부회장후보를 추천한다.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가부를 묻는 우편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부회장으로 당선된다.

제17조 이사는 30인 이내로 한다. 회장은 매년 15인 이내의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권한에 속하는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사무국장, 학술대회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에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단체회원의 입회승인
- ② 임시총회 소집의 동의
- ③ 부회장후보의 추천
- ④ 회원의 제명, 경고 등 징계에 대한 의결
- ⑤ 예산·결산서 등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의결
- ⑥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 총회에 부의할 것인가 여부
- ⑦ 학술대회의 개최에 대한 승인
- ⑧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회무에 관한 의결권

제19조 회장은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출석이사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대회위원장, 사무국장(차장),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학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한 사전논의 및 조정을 주기능으로 한다.

제21조 본 학회는 2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구두호선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중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제22조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에 관한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학회는 사무국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 본 학회는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사무 및 회계를 총괄하는 1인의 사무국장 과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2인이내의 사무차장을 둔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25조 본 학회는 학술대회위원회를 둔다. 학술대회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학술대회위원장 1인과 학술대회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술대회위원장과 학술대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학술대회위원회는 정기학술대회 등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26조 본 학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는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 5 장 사 업

제27조 본 학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응용경제(The Review of Applied Economics)』를 발간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회원/비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된 논문을 심사·평가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응용경제』의 편집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편집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편집내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8조 본 학회는 연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가진다. 학술대회의 개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술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관한 일체사항은 학술대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본 학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관련된 기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30조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31조 회계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학회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회장이 갖는다.
- ②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③ 회계연도말에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정관의 개정

제32조 본 학회의 정관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학회의 초대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조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3조 초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첫 1년간은 부회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초대 회장은 임기 2년의 이사와 임기 3년의 이사를 각각 15인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 2년의 감사 1인과 임기 3년의 감사 1인을 위촉하며, 임기 2년의 편집위원과 임기 3년의 편집위원을 각각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2008년 한국응용경제학회 임원 명단 및 연락처

직위	성명	소속	e-mail	연락처
회장	김성태	청주대학교	stkim@cju.ac.kr	(043) 229-8182
부회장	류근관	서울대학교	ryu@snu.ac.kr	(02) 880-6397
감사	류재우	국민대학교	jryoo@kookmin.ac.kr	(02) 910-4524
사무국장	김기승	청주대학교	gskim@cju.ac.kr	(043) 229-8180
사무차장	이한영	중앙대학교	lee10@cau.ac.kr	019-323-2121
이사	정진호	경쟁력평가원	jeong@imi.or.kr	011-475-2014
	노근호	충북개발연구원	rohkh@cbdi.re.kr	043-220-5480
	이춘근	경북대구개발연구원	cklee@ddi.re.kr	(053)749-5021
	유일호	KDI국제대학원	yoo@kdischool.ac.kr	(02)3299-1114
	엄기웅	상공회의소	kwom@www.kcci.or.kr	(02)316-3114
	홍기택	중앙대학교	hongecon@cau.ac.kr	(02) 820-5498
	김중웅	현재경제연구원	-	(02) 3669-4005
	이영기	동국대학교	rheeyb@netsgo.com	(02) 2260-0114
	박광서	전남대학교	ksp@chonnam.ac.kr	(062) 530-1543
	함정호	한국은행	jhhahm@bok.or.kr	(02) 750-5401
	신동천	연세대학교	shindc@yonsei.ac.kr	(02) 2123-2486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echah@mm.ewha.ac.kr	(02) 3277-2797
	최정표	건국대학교	jpchoi@konkuk.ac.kr	(02) 450-3624
	유경문	서경대학교	kmyoo@kornet.net	(02) 940-7115
	이정우	경북대학교	joulee@kyungpook.ac.kr	(053)950-5406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	sdshim@kdi.re.kr	(02) 958-4042
	변재권	전북대학교	bjk@moak.chonbuk.ac.kr	(063) 270-2114
	정희수	국회의원	-	-
	박정수	서강대학교	jspark@sogang.ac.kr	(02)704-8599
	김인무	성균관대학교	imkin@skku.edu	(02)760-0443
	이중화	고려대학교	jongwha@korea.ac.kr	(02)3290-2216
	황인정	강원개발연구원	jongwha@korea.ac.kr	-
	서승환	연세대학교	shsuh@yonsei.ac.kr	(02) 2123-2483
	문춘걸	한양대학교	mooncg@unitel.co.kr	(02) 2290-1035

여백

© 2011 by the author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이 편람은 통계청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관련 법령(민법 및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과정 등을 정리한 것임

여백

© 2011 by the author

I. 일반 사항

1. 법인의 의의

- 자연인 이외에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 즉, 일정한 조직을 가지는 사람의 집단(社團) 또는 독립의 목적재산(財團)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

2. 법인의 종류

□ 공법인, 사법인

-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획일적 기준으로 구별하기가 곤란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 한국은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법으로 설립된 법인은 공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이 영리의 추구에 있느냐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민법 제32조)

- 실정법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 법인이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법인인가 아니면 상법상의 상사법인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다.
- 통설은 상법상의 법인을 영리법인이라 하고, 상법 이외의 민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 ※ 비영리법인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두가지 중 하나로서 설립되어야만 하며,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은 인정하지 않음

3. 사단·재단법인

(1) 적용 법령

- 민법 제3장(법인)
-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으로 칭함)

(2) 사단법인

-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
 - 실체 : 사람의 집단
 - 기본요소 :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
 - 총회에 의하여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집행

(3)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단체
 - 실체 : 재산의 집단
 - 기본요소 : 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
 -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구속

(4)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의미

□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음

□ 허가주의를 채택

- 민법은 또한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임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판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업무개요

구 분	비 영 리 법 인
허 가	1. 법인설립허가(민법 제32조)
	2. 정관변경허가 - 사단법인(민법 제42조), 재단법인(민법 제45조)
	3. 잔여재산처분허가(민법 제80조 제2항)
	※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 허가사항(규칙 제6조 참조)
보 고	1. 설립관련 보고(규칙 제5조제1항) - 재산이전 보고
	2. 등기 보고(규칙 제5조제2항)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 분사무소 설치등기(민법 제50조) - 사무소이전등기(민법 제51조) - 변경등기(민법 제52조)
	3. 감사의 법인의 위법·부당사항 보고(※정관 규정)
신 고	1. 해산등기신고(민법 제86조)
	2. 청산종결등기의 신고(민법 제94조)
검 사 감 독	1. 법인사무의 검사감독(민법 제37조)
	2. 검사감독상 불가피한 경우 관계자료 제출명령(규칙 제8조)
	3.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사무 및 재산사항 검사(규칙 제8조)
행 정 조 치	1. 법인설립허가 취소(민법 제38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시 청문 실시(규칙 제9조))
벌 칙	<p>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민법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민법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민법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민법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비교

구 분		社團法人	財團法人
정 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설립근거		비영리 사단·재단 (민법 제32조)	
설립절차		요식행위인 합동행위	요식행위인 단독행위
		① 2인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에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①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자유재량)	
		③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필수 기관	사원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	사원없음 → 사원총회 없음
	이사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함	
임의 기관	감사	이사의 사무집행 감독 등	
법인 법률효과		권리능력·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	
활 동		〈자율성〉 사원총회를 통해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활동	〈타율성·영속성〉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타율적으로 활동

통계청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2008. 10월 현재)

구 분	개수	법인명	설립근거
사단법인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통계학회(1987) ▶ 한국인구학회(1995) ▶ 한국조사연구학회(2000) ▶ 한국사회조사연구소(2004) ▶ 한국통계조사연구소(1990) ▶ 한국응용통계연구원(1970) ▶ 통우회(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제32조 ▶ 기획재정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단법인	1	▶ 한국통계진흥원(1963)	

※ 유사개념과 구별

(1)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도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설립근거법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2000. 1.12, 법률 제6118호, 시행 4. 13) 제4조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얻기 위해 행정청에 등록하는 단체임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

※ 통계청의 경우 한국통계학회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음
(2000.5.9)

(2) 공익법인과 구별

- 공익법인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며,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얻고 공익적 견지에 의해 강화된 감독을 받는 법인
- 따라서 자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재단 법인이라 하더라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이 아님

※ 통계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법인중 공익법인은 없음.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시 공익법인으로의 설립을 희망하는 의사가 문서상 명기되어야 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통계청공고제2000-6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제14509호

관 보

2000. 5. 22. (월요일)

<p>4. 신기술 기술의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콘크리트와의 친화도가 있고 내약품성이 있는 폴리프로판렌피리를 원소로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침투저하의 원인인 증산화, 염화, 종결유해, 산성비 및 가스 등의 염해를 차단하기 구조물의 수명을 보존하고 또 내열저항을 그 주된을 전장시킬 수도 있는 콘크리트의 특이하다. 본 공법의 사용되는 재료는 콘크리트와의 친화도를 높이기 위하여 알칼리성의 소량의 카우디를 첨가하여 염화성 화합물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p> <p>신기술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p> <p>가. 콘크리트와의 친화도를 높여 장기적인 염화성화를 방지하므로 확고하게 접이된 골카리콘 재료</p> <p>나. 전장의 재료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침투저하의 원인인 부식인자 즉 증산화, 염화, 종결유해, 산성비 및 가스 등의 차단을 최함 콘크리트공법</p> <p>5.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개발센터(0314-910-001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곡동 2311)에 연락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p> <p>◎해양수산부공고제2000-43호</p> <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중보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p> <p>2000년 5월22일</p> <p>해양수산부장관</p> <p>1. 단체명칭: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2. 소재지: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5-1 일화강일빌 502호 3. 대표자 ○성 명: 양정명 ○주민등록번호: 321207-1840411 ○주 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08-1 현대3가 307동 2006호 4. 등록번호: 해양수산부등록 제1호 5. 등록년월일: 2000년 5월 9일</p>	<p>6. 후원사업</p> <p>○해양·수중 및 수역의 각종 청소·정화 ○해양과 수중의 환경감시 및 치병예방, 등·구제시설 ○해양 및 생태, 환경분야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제공 ○해양·수산, 환경, 생태, 문화분야 환경영양물 조사·보급 ○국내외 환경교육 및 열대사업, 국민제휴사업 등</p> <p>~~~~~</p> <p>◎통계청공고제2000-6호</p> <p>다음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p> <p>2000년 5월22일</p> <p>통 계 청 장 관</p> <p>1. 단체명칭: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 2. 소재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41 (4차)기술의관 308호) 3. 대표자 ○성 명: 안은기 ○주민등록번호: 470711-1025816 ○주 소: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 4. 후원사업: 통계연구, 통계의 이론개발 및 보급, 학술활동 5. 등록번호: 제1호 6. 등록일자: 2000년 5월 9일</p> <p>~~~~~</p> <p>◎농촌진흥청공고제2000-4호</p> <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중보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p> <p>2000년 5월22일</p> <p>농촌진흥청장</p> <p>○단체의 명칭: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표자 성명: 최병국 ○주관 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 436-3 ○주관 사업: 과학농업신도, 농가소득증대, 농민권익보호 및 농민복지 ○등록번호: 제1호 ○등록년월일: 2000년 5월17일</p>
--	---

Ⅱ. 법인의 설립

1.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설립허가)

2. 법인 설립허가 처리절차 및 신청서식

□ 처리절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구분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별도의 수수료 없음)
설 립 발 기 인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정 관	○ 정관 1부
재 산 사 항	○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1부 - 기본재산 :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증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주명부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 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등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의 경우, 신청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계획 등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임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 기재 서류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 등 포함 ○ 임원의 취임승낙서 1부
회의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3. 정관작성 (민법 제40조, 제43조)

- 정관은 법인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향후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고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함
- 정관본문 기재사항(⑥⑦은 사단법인만 해당)
 - ① 목 적
 - ② 명칭 : 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금지
 - ③ 사무소의 소재지 : 읍·면·동 번지까지 기재
 -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별지 기재
 -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⑧ 기타

4. 법인설립 허가시 검토사항

□ 허가기준 (규칙 제4조)

-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법인설립허가 검토사항

(1)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및 사업 등이 통계청의 소관업무 범위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
 -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 공익성, 합법성과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
-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개개인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즉 수익금이 구성원(개인)에게 배분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 즉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음

(2) 법인의 독자성과 실현가능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과 동일한지 여부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문서로 확인하고, 동일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를 지양,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함
 -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를 검토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함

-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함

(3)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 재단법인인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예 : 절대농지 등의 재산출연은 법인 소유로서 불가능)를 검토
 -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며,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됨
-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 부동산 임차보증금은 법인 운영의 안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할 수 없도록 함

(4) 구비서류의 누락여부 검토

- 기획재정부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검토
 - 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검토
 -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 필요

(5) 정관검토

- 정관검토시 다음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정관변경의 주무관청 허가규정
 - 법인사무소 주소의 최소단위(번지, 호)까지 표기

- 기본재산목록이 별지형태로 첨부
 - 법인해산시 해산신고 및 잔여재산 처분허가규정
 - 임원의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수에 회장 또는 부회장 등이 포함되는지 명시
 - 법인의 임원은 가급적 정수로 표기하되 범위를 지정할 경우 최소한으로 지정
 - 법인의 목적사업의 종류를 구체성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
- 정관검토시 다음의 사항은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
- 주무관청의 기본재산처분허가권(정관변경절차로 같음)
 - 임원취임승인권(공익법인만 해당)
 - 법규상 근거가 없는 사업계획승인권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가입절차를 가입신청서 제출 후 가입승인절차를 별도로 두는 등 지나치게 까다롭게 두는 규정
 -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는 규정(총회에서 선출토록 해야 함)
 -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의 표결권을 위임 또는 포기하도록 정한 규정

5. 법인의 설립허가 통지

- 처리기간 및 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

※ 설립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할 경우 허가 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앞면 또는 뒷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통보

- ① 법인의 명칭 변경(정관변경 신청 필요)
- ② 사업내용 변경(정관변경 신청 필요)
- ③ 허가조건 변경
- ④ 소재지 변경(정관변경 신청 필요)
- ⑤ 대표자 변경

- 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허가조건 예)
 - ①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 ②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말 것
 - ③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
- 허가증 교부시 법인설립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 신청서 구비서류 및 법인관련서류는 법인 별도대장으로 관리

6. 법인설립 등기

- 법인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이와 거래하는 제3자가 법인의 존재, 조직, 재산상태 등 거래상 필요한 사항을 쉽게 아는 방법이 없다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힐 수 있음
 -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고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됨
- 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설립등기 하여야 함 (민법 제49조)
 - 목 적
 - 명 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

※ 법인이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법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설립허가시(민법 제49조)
- ② 민법 제49조 2항(설립등기사항)중 변경이 있는 경우(민법 제52조)
- ③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민법 제50조)
- ④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민법 제51조)
- 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민법 제52조의 2)
- ⑥ 법인을 해산할 경우 (파산의 경우를 제외)(민법 제85조)
- ⑦ 청산이 종결한 때(민법 제94조)

Ⅲ. 법인의 기관

1. 이 사

(1)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함 (민법 제57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서 정해야 함 (민법 제40조)

(2) 이사의 직무권한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짐
 -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수인인 경우는 연대손해배상책임을 짐

② 법인의 대표권

-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함
 - 대표하는 사무는 법인의 모든 사무로 제한이 없음
 - 각자 대표하므로 이사가 수인 있어도 각 이사는 단독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독대표가 원칙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됨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 대표권의 제한은 무효(정관에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민법 제59조제1항 단서에서 이사가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은 회원총회의 의결로써 제한할 수도 있음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해당사항에 한하여 법인을 대표할 수 있을 뿐이나 역시 법인의 대표기관임은 이사와 동일함)

③ 법인의 업무집행권

- 이사는 법인의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함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
 - 이사가 집행하여야 할 사무는 회원명부의 작성, 총회의 소집, 총회 회의록 작성, 파산신청, 청산인이 되는 것, 등기 등이 있음

2. 감 사

(1) 의의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로 감사를 둘 수 있음 (민법 제66조)
 - 민법상의 법인에서 감사는 임의기관임
 - 당연직 감사는 불인정

(2) 감사의 직무권한 (정관에 감사를 두도록 한 경우)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 감사역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 의무에 위반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3. 이사회

(1) 의의

- 민법은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를 법인의 당연한 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2) 이사회 기능 (정관에 이사회를 두도록 한 경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기타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 이사회 의결사항 중 정관변경, 법인 해산의 의결 등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4. 총회

(1) 의의

- 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없고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
 - 총회는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폐지할 수 없음
 -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회원은 누구나 평등한 지위에서 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권을 가짐

(2) 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의 예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

(3)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통상총회(정기총회)

- 통상총회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일정한 시기에 소집
- 소집시기는 정관 또는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만 만일 그 시기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정함

②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
 -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 총회원의 1/5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총회원의 1/5이라는 정수는 정관을 증감할 수 있음
 -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소집절차(민법 제71조)

-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행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05판결>

사단법인의 신임회장을 조속히 선임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업무의 공백을 메워야 할 형편에 있는 정관소정의 기한 내에 전화로 안건을 명시하여 총회소집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총회결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면 총회 소집통지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하였다는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판결>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 무효이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누884판결>

· · ·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일부 이사들이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이러한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다 한들 이사회 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4) 총회의 결의사항 및 방법

- 총회의 결의는 민법 제71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지 회

- 지방에 분사무소(지회)를 설치하는 경우 지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대구지법 1988.12.19 선고88카12711제1민사부판결>

대구중구지회가 비록 독자적인 정관을 갖지 않고 사단법인 한국이용사회의 산하단체로서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을 받고 수입금의 일부를 중앙회에 납부하며 업무상 지도 감독을 받는 점 등은 인정되나, 그 지회자신이 회원다수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로서 지회장, 부지회장, 상임위원, 감사 등의 기관과 정기총회라는 의결기관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나름대로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IV. 법인의 관리

1. 정관변경 허가

(1) 근거법령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및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음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제4호서식]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이 요청됨 (민법 제76조)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4) 검토사항

① 적법성 및 타당성

-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 민법, 규칙 및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일시 및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확인
 - 의결정족수(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 법인이 수행능력이 있는지 여부

-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②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 예를 들어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예 : 현행의 임기 4년을 3년으로 변경)에 경과규정이 없을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된 규정의 임기를 적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정관개정 당시의 임원에게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③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및 수지예산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④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를 검토

※ 정관중 민법 제49조 2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민법 제52조)

2. 기본재산처분 허가

(1) 근거법령

-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4호

(2) 신청절차 및 수비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에 따름
-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기본재산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재단법인)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3. 보고

(1) 재산이전 보고 (규칙 제5조 1항)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설립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재산목록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통계청)에 제출하여야 함

(2) 등기사항 보고 (규칙 제5조 2항)

-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설립등기(민법 제49조), 분사무소설치등기(민법 제50조), 사무소이전등기(민법 제51조), 변경등기(민법 제52조)

(3)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검사·감독

□ 자료제출 명령 및 업무검사(민법 제37조 및 규칙 제8조)

-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5. 벌칙(민법 제97조)

□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V. 법인 해산

1. 허가취소

(1) 허가취소 요건(민법 제38조)

-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대법원 1968. 5. 28 선고 69누55판결>

설립허가를 얻어 일단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그 허가자체에 위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 후에 있어서의 허가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것인 바, 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국한된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위 법인의 설립목적달성불인인지의 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원판결 인정과 같이 그렇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77조 소정당연 해산사유에 해당될지 몰라도 그 목적달성 불능이란 사유의 발생자체만 가지고서는 위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145판결>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기한 보다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설립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절차

-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코자 하는 경우 청문절차 경유(규칙 제9조)
 - ※ 청문의 절차와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27조 내지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0조 참조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심판(소송) 또는 취소처분의 무효확인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취소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인정

<1996.12.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취소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거나 위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이 법률상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2. 해 산

(1) 해산사유(민법 제77조)

- 존립기간의 만료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 법인의 파산
- 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인)
- 설립허가 취소

(2) 절차

-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법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구비서류

- 법인해산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 해산당시의 정관 1부
-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사단법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1부
- 재산법인 해산시 이사회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1부

3. 잔여재산처분 허가

(1) 근거법령

-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항
 - 해산한 법인이 정관으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규칙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2) 신청서류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 처분사유서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소재지, 종류, 수량 및 금액
-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록 사본 1부

(3) 처리기간 : 없음

(4) 심사기준

- 잔여재산처분사유 및 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

4. 청 산

(1) 근거법령

- 민법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규칙 제12조(청산종결시 신고)

(2) 신고서류

- 청산종결신고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규칙 제12조)

※ 청산인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생략함

[청산]

- 법인의 잔여재산 청산은 법인해산과는 별도로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임
 -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와 기타의 원인으로 해산하는 경우로 대별되며, 전자의 경우는 파산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므로 주무관청이 관여할 사항이 없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이를 감독하고 주무관청이 관여함
- 청산기관
 - 법인이 해산하면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됨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 청산법인을 대표
 - 파산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함
- 청산절차
 - 해산의 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변제 → 잔여재산의 인도 → 파산신청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법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 민법 제88조에 의거 처리
 - 청산인은 채권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을 변제할 수 없음

<대구고법 1969.7.10 고집1969민(2),36>

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로 있던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계속 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Ⅵ. 관계 법령

여백

© 201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민 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0호]

제 3 장 법 인

제 1 절 총 칙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설 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등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등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9]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 3 절 기 관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12.29]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 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

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 절 해 산

제77조 (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 (해산등기)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 (해산신고)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①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절 별 칙

제97조 (별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재정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7.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

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1부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산종결시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5]

부 칙 <제111호,1999.12.9>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주무관청에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서식2 법인설립허가증

서식3 법인설립허가대장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9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정수)·임기 및 그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

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14]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3.14]

제7조(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 의사(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④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장기차입)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무상대부)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지체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③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감사 등) ①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9조(벌칙) 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 ③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제20조 삭제 <2008.3.14>

부 칙 <제2814호,1975.12.3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 (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제4932호,1995.1.5>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부 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제7228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제8895호,2008.3.14>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법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 (정관에 기재할 사항) ①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허가신청) ①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1991.5.31>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8.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9. 삭제 <1991.5.31>
- ②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설립허가시에 붙일 조건) ①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3.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함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7.6, 1998.12.31, 2008.2.29>

제7조 (임원취임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고,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5.31, 1993.11.20, 1995.7.6, 2004.3.17, 2006.6.12>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이력서 1부

3. 삭제<1995.7.6>

4. 취임승낙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삭제 <2006.6.12>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② 제1항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자의 호적등본을 확인(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되, 연임되는 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7.7.18>

제8조 (재산이전의 보고) 공익법인(재단법인에 한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제9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7.6, 2004.3.17, 2007.7.18>

제10조 (정관변경허가신청) 공익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 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공익법인이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제5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

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6>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다음의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라.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아.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자.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입하여야 한다.<개정 1995.7.6>

제13조 (주무관청의 감사추천) ① 주무관청은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추천을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 의뢰된 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추천 의뢰를 요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으로부터 감사 1인을 추천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내에 추천의뢰가 없는 경우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가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종전에 그 법인의 감사중 1인을 주무관청이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새로이 법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는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상근직원의 정수 승인신청) 공익법인이 법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직원의 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기구도표와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 (재산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1.20, 1995.7.6>

1. 처분재산명세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5.7.6>

③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2. 피담보채권액
3. 담보권자
4.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5. 이사회회의록 사본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장기차입에 대한 허가) ① 공익법인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장기차입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

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1995.7.6>

② 공익법인이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수지를 명확히 하여 당해연도내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제출) ①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공익법인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재산관리) 공익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편성요강) ① 공익법인의 예산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및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 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에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2조 (회계원칙)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회계의 구분)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24조 (재산의 평가)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의 청산인은 해산후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잔여재산이 귀속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권리 이전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대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4.12.23, 1995.7.6, 2001.1.29, 2008.2.29>

제26조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사유)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영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손,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수 없게 할 우려를 생기게 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의2 삭제<1997.12.31>

- 제27조 (법인사무의 감사) ① 주무관청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에 의한 감사는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액수이상의 기본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1995.7.6>

제28조 (준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되,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8059호,1976.4.1>

- ① (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통지) 주무관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그 소관 법인중 법 및 이 영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감사중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는 한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중 1인을 추천의뢰하여야 한다.
- ④ (수익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수익사업의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상근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중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상근직원의 정수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⑥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익법인은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영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712호,1995.7.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등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장기차입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차입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 (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판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611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 ⑤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4조 (등록의 말소) ①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개정 2008.2.29>

④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 ③ 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 (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행정지원 및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요금의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률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서식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서식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서식3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지정기부금단체관련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법인세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6.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5.12.31>

법인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0 대통령령 제20849호]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

한 가액과의 차이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자산의 평가차손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가. 「초·중등교육법」에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 라. 「고등교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18.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

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
났을 것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자. 삭제 <2001.12.31>

차. 삭제 <2001.12.31>

카. 삭제 <2001.12.31>

타. 삭제 <2001.12.31>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
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
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
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
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
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이나 제1항제1호사목의 요건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⑥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월결손금(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50

2. 삭제 <2006.2.9>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법인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3.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개정 2002.3.30>)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5.11.30, 2006.3.14, 2006.8.11, 2006.8.16, 2007.3.30, 2007.12.5, 2008.3.31>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또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한일친선협회 및 한일협력위원회
4.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5. 어린이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8.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1.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1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5.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
1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7. 「도서관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된 도서관 또는 문고
18.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그 산하조직을 포함한다)
1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사학진흥재단
2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
2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27.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국제문화친선단체
28.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시설법인
29.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단법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31의2.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33.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34.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35.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3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3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8.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한 재외동포재단
39. 삭제 <2007.3.30>
4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4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3. 「산지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지보전협회
44.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4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4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4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51.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5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5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55. 「소방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56.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5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58.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5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6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6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6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6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
 6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5.11.30, 2006.3.14, 2007.3.30, 2007.12.5, 2008.3.31>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0.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1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2.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4.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및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15.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6.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법률 제5310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8.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에 한한다)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 「기능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3.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아동복

- 지·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동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 법인에 한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6.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농업씨시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7.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9.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30.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③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신설 2008.3.31>

⑤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별지 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1>

⑥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7.3.30, 2008.3.31>

⑦ 영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3.30, 2008.3.31>

법인세법상 공익성지정기부금 대상단체 추천요령

(기획재정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주요질문모음 에서 발췌)

□ 대상법인(법인세법시행령 § 36조 ①항 1호 사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주의 :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등으로 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정관 개정후 추천)

세법상 유사문구는 다른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령상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함.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5)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명단 조회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공고(검색 : 기부금)

□ 추천자 : 주무관청의 장(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곳)

□ 추천방법 : 주무관청에서 공문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에 추천

□ 지정 및 추천시기 : 대상단체 지정은 매분기별로 시행(3, 6, 9, 12월)하고, 주무관청의 추천은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전까지 제출(매분기 10일까지 공문 및 첨부서류가 법인세제과에 도착)

□ 지정의 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사업연도

□ 추천서 제출서류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에서 작성)
- 설립허가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정관(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규정 반드시 확인)
- 사업계획서
-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년도 예산서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 설립후부터 신청하는 사업연도 전까지 결산서)

□ 손비인정 한도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 인정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 10%)

○ 계산 사례

사례1 : 매출액 2억원, 필요경비(재료비, 급여등) 1억5천만원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1천만원을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다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개인 : $(2억 - 1억5천만원) \times 15\% = 7백5십만원$ (초과하는 250만원은 필요경비 불산입)

○ 법인 : $(2억 - 1억5천만원) \times 5\% = 2백5십만원$ (초과하는 750만원은 손금 불산입)

사례2 : 총급여액 5천만원, 근로소득공제액등 3천만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년에 300만원을 교회에 기부하였을 경우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5천만원 - 3천만원) \times 10\% = 2백만원$ (초과 기부한 100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음)

□ 법인명칭 변경신고서 제출서류

- 명칭 변경 신고서 공문
- 법인등기부등본(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 지정단체 시한 종료의 경우

-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명단에 지정단체의 시한을 표기
 - 기한을 연장하려면 2008년 12월 10일까지 재신청
 - 제출서류 : 신규신청서와 동일함, 공문에 재신청을 표기하여야 함

※ 붙임 : 추천서 양식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2 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 인적사항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 개시일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내용 (별지 작성가능)			
2.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별지 작성가능)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년		년	년
년		년	계
다. 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별지 작성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 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의 장) ㉠</p>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통계청 지정기부금단체 현황 및 법적근거

-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지정요건)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
- 우리청 소관 3개 지정기부금단체('05년 12월이전 지정)는 지정당시 시행규칙 제18조 39항에 의거 지정

대상단체명	지정일	지정기간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8/30	2008/12/31
(사)한국조사연구학회	2005/12/30	2010/12/31
(사)한국통계학회	2005/12/30	2010/12/31

- '07.3.30일 현재 시행규칙에 명시된 우리청소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근거는 삭제되고, 대신에 요건이 강화되어 시행령 제36조 사항에 명시됨

<변경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변경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3)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5)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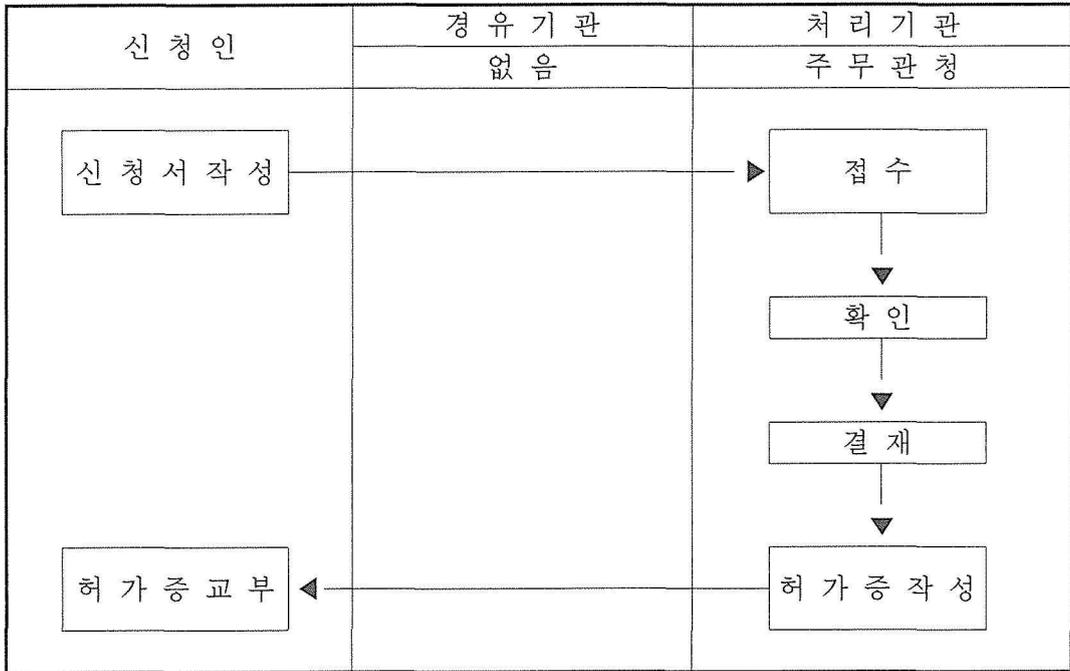
Ⅶ. 관련 서식

여백

© 2011 by the author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4. 사업내용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장관(청장) 인

210mm×29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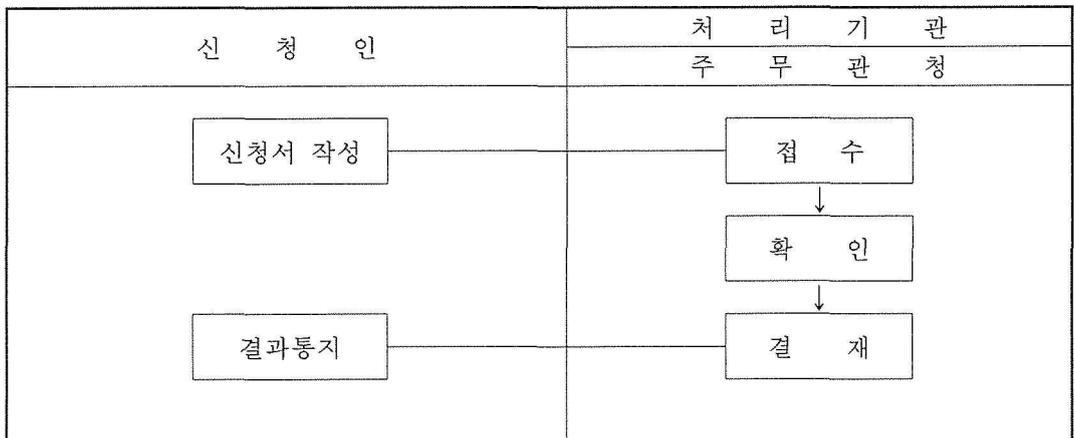
(인쇄용지(특급) 34g/m²)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명 칭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⑦전화번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사유				
<p>민법 제80조제2항 및 기획재정부장관및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잔여재산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여백

© 2011 by the author

VIII. 작 성 예

여백

© 2011 by the author

[작성예1] 발기인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약력	기명 날인
1	김성○	123456-78901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대학교 총장	○
2	강명○	654321-3123456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한국○○○ 전국연맹 사무총장	○
3	김영○	500091-3023454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한국○○노동자회 협의회 대표	○
4	이남○	580211-3456234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5	이철○	234556-8765544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 사랑나눔회 상임이사	○
6	이혜○	239801-8390284	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	○○대학교 교수	○

※ ‘기명날인’이라 함은 방식에 제한이 없이(자필 외에 고무인의 날인, 인쇄, 타자 등 어느 방식이건 가능) 성명을 기재하고 동시에 인장을 찍는 것을 말함

[작성예2] 재산목록

재 산 목 록						
총 계						
1.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m ²)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건 물				
		대 지				
		출연금				
		소 계				
2. 보통재산	품 목		대 수	종 류	금 액	비 고
	컴퓨터		○대	펜티엄IV 급 조립품	○○○천원	현재가
	차 량		○대	○○	○○○천원	
	소 계				○○○천원	

[작성예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00○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
 - 계획의 목적과 연도별 계획명시

- 수지예산서
 - 예산총괄표

사업명	예산액	산출근거

- 수지예산서(수입지부)

연예산액	월예산액	사업내역	비고

- 수지예산서(지출지부)

내역	금액	비고

- 잔액증명서
 - 금융기관에서 확인

[작성예4] 임원명단

임원명단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약 력
대표이사	200 . . . ~ 200 . . . (3년간)				
상임이사	”				
이 사	”				
.	”				
.	”				
감 사	200 . . . ~ 200 . . . (2년간)				
.	”				
.	”				

[작성예5] 임원취임 승낙서

임원 취임 승낙서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347890-3384928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102동 102호

상기 본인은 ○○○의 회장(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년 ○월 ○일

○ ○ ○ (인)

첨부 : 인감증명서, 임원이력서 각 1통

(가칭)사단/재단법인 ○○○귀중

[작성예6]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석자 : 발기인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
 - 2. 임원선출
 - 3. 재산출연사항
 - 4.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 안 심의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0○년 ○○월 ○○일 ○○시 가칭 “ 재단/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 재단/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0○년 ○월 ○일
 가칭 재단/사단법인 ○○재단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정관변경사유서

본 법인의 임원 중 이사 정수가 7인으로 구성되었으나 . . .
. 위하여
정관 제○조 중 “이사 7인”을 “이사 9인”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법인 ○○이사장 (인)

통 계 청 장 귀 하

[작성예8] 정관변경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에 <u>지부</u>를 둘 수 있다.</p>	<p>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 본부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u>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 환경○○○를 각 시·군·구에 시·군·구지부</u>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임원) (생략) 1. (생략) 2. (생략) 3. 이사 : <u>9명(회장, 부회장 포함)</u> 4. (생략)</p>	<p>제6조(임원)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이사 : <u>5~15명(회장, 부회장 포함)</u> 4. (현행과 같음)</p>
<p>제15조(<u>고문의 위촉</u>) 1. 본회에 <u>약간명의 고문</u>을 둘 수 있다. 2.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p>	<p>제15조(<u>고문 및 운영위원의 위촉</u>) 1. 본회에 <u>약간명의 고문 및 운영위원</u>을 둘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운영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회장이 요청한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u> 5. <u>고문 및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u></p>
<p>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u>사무국</u>을 둔다. 2. <u>사무국에는 사무국장</u>과 기타 필요한 직원 <u>약간인</u>을 둔다. 3. <u>사무국 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별도운영규정</u>을 정한다.</p>	<p>제16조(사무부서) 1.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u>사무처</u>를 둔다. 2. <u>사무처에는 사무총장</u>과 기타 필요한 직원 <u>약간인</u>을 둔다. 3. <u>사무처 조직과 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별도운영규정</u>을 정한다.</p>

[작성예9] 연도말 보고(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계획서)

1. 전년도 사업실적서(200○)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2. 금년도 사업계획서(200△)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실적)	집행예산	비고

3. 전년도 수입·지출결산서

가. 세입부(수입)

예산과목			200○년도	200△년도	증감내역		세입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세출예산액	세출결산액	증	감		

나. 세출부(지출)

예산과목			200○년도	200△년도	증감내역		세출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세출예산액	세출결산액	증	감		

4. 금년도 수입·지출예산서

가. 세입부(수입)

예산과목			200○년도	200△년도	증감내역		세입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세출예산액	세출결산액	증	감		

나. 세출부(지출)

예산과목			200○년도	200△년도	증감내역		세출결산 산출근거	비고
관	항	목	세출예산액	세출결산액	증	감		

5. 기본재산목록

가. 기본재산 목록

1) 총괄표

구분	내역	200○년도말	200△년도말	증감	비고
		현재	현재		
토지	면적	○필지 ○m'	○필지 ○m'	○필지 ○m'	
	평가액	원	원	원	
건물	면적	○필지 ○m'	○필지 ○m'	○필지 ○m'	
	평가액	원	원	원	
부동산소계	평가액	원	원	원	
동산	현금	원	원	원	
	유가증권	원	원	원	
동산소계		원	원	원	
합계		원	원	원	

2) 기본재산 증감내역

가) 부동산

① 증가된 부동산

(단위 : m',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적	평가액	소유권 기속 등기일자	취득보고일자 (문서번호)	비고

② 감소된 부동산

(단위 : m',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적	평가액	소유권 기속 등기일자	처분승인일자 (문서번호)	비고

나) 동산

① 증가된 동산

(단위 : m', 원)

구분	금액	재원 조성내역	취득보고일자 (문서번호)	비고

② 감소된 동산

(단위 : m', 원)

구분	금액	재원 조성내역	처분승인일자 (문서번호)	비고

3) 기본재산 목록내역

가) 부동산

(단위 : m², 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구조	면적	평가액	등기일자	용도	비고

나) 동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재원조성내역	법인귀속금융 기관예치일자	비고
현금		예)-소재 기본재산 처분금		금융기관
유가증권		예)-주식회사 주식 100주 (주당 액면가)		예치증서 필히 첨부

나. 보통재산현황

품명 (동산 또는 부동산)	수량 또는 면적	취득년월일	평가액	용도

6. 회원 이동사항(사단법인에 한함)

구분	200◇년도 12. 31현재	200○년도 12. 31현재	증감		증감사유 및 기타
			증	감	
정회원					
준회원					
계					

여백

© 2011 by the author

Ⅸ. 부 록

여백

© 2011 by the author

1. 사단법인 정관준칙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8.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업무의 집행
 - 나. 사업계획의 운영
 - 다. 예산·결산서 작성
 - 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바.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는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4.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4.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재단법인 정관준칙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한다.
4.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8. 대표자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나.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5.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6.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5장 보칙

1.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
3. 법인을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한다.

3. 사단법인 정관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
○리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2.
- 3.
- 4.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에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인
4.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상임이사) ①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장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없음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사제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사제2]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제16조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의2(대의원)[사제1]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제2]대의원의 법인의 이사, 감사, 각지부에서 2인, 회원단체에서 각 1인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 대의원을 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 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4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4. 재단법인 정관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도) ○○구(군) ○○동(면) ○
○리 ○○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 2.
- 3.
- 4.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불입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10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업무보고)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 법인인 목적사업용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 ○인

4. 감사 ○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임하며, 각각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임원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 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입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환경부장관및그소속청소관의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사제1]①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사제2]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22조(이사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 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 회의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8조(사무국) ①법인의 실천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본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본부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 ①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0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7장 보 칙

제31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정, 비송사건절차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5. 비영리사단법인 지도·감독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국무조정실, '05.12)

1. 주무 관청의 지도·감독 소홀

□ 형식적인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 소관 부처가 감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법인의 부적정운명을 방치하거나 정부 위탁사업 이익금을 법인이 임의적립하는 것을 용인
 - 총회나 이사회 등을 개최한바 없이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선임 및 운영을 함에도 감독부서가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감사
 - ※ ○○부 소관 ×××협회(04.12.30)
 - 비영리사단법인이 임의로 정부위탁사업비 이익금을 기금(건물매입비)으로 적립 하였으나 감사부서가 기금운용상황을 감사착안사항으로 정해놓고도 이에 대한 감사를 누락
 - ※ ○○청 소관 ×××협회 총18억원 적립
- 감독부처가 비영리사단법인이 사업실적·사업계획서 등을 보고하지 않고 정부 위탁사업 교육비를 과다책정하여 이익금을 법인이 결산누락함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정관변경승인 검토소홀
 - ※ ○○청 소관 ×××협회는 정부위탁사업 교육비를 과다책정하여 이익금중 총 6억7천만원을 결산에서 누락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교육비승인 소홀
 - ※ ○○부 소관 ×××협회는 매년 의무보고사항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미보고, △△협회의 경우에는 당초 변경승인안대로 정관개정을 하지 않음에도 협회 작성안대로 인정 및 중복승인

2. 회계 및 결산분야의 부적정 운영

□ 결산 및 회계공개제도 부재

- 회계장부열람권, 결산자료 공개제도를 대의원회에 국한하여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대의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에 대한 정보공개제도 등이 부재
 - 총회 및 이사회 결정사항, 정관개정사항, 결산자료에 대해서 총회 및 이사회 미참석 회원이나 이사들에게 미공개
 - ※ ○○청 소관 ×××협회, △△△부 소관 □□□회

□ 예산·회계 및 결산분야 자의적 운영

- 예산·회계 등 운영에 대한 제반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법인운영자금 차입·상환을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추진
※ ○○부 소관 ×××협회

□ 정부위탁 및 국고보조금 사업 부적정 운영

- 정부위탁 교육비를 과다책정하여 이익금을 관련 규정 없이 건물매입비 명목으로 기금적립
※ ○○청 소관 ×××협회
- 국고보조금 사업을 집행후 이에 대한 정산보고를 누락하는 등 해당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
※ △△△부 소관 □□□회는 04년 ×××사업(총예산 10억원)을 국고보조로 집행후 간접비 5천7백만원에 대해 정산보고 누락

□ 비영리사단법인 운영비를 정부보조금에 전액 의존

- 법인의 운영경비를 회원들의 회비 및 자체사업에 의해 조달하여야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비용을 지원
※ ○○○부는 ×××회에 대해 3억원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지 않고 운영비용 전액지원(05.4.11)

3. 총회 및 이사회 운영의 부적정

□ 회장 및 임원선거제도 규정 불비

- 일부 법인의 경우 회장 및 임원에 대한 임기 및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선거와 관련해 회원들의 민원제기 소지 가능성 존재

비영리사단법인 선거제도 현황

법인 \ 항목	회장임기/ 연임	회장선출방법	임원임기/ 연임	임원선출방법
×××회	규정없음	총회선출	규정없음	총회선출
△△△협회	3년/연임	대의원총회선출	3년/연임	회장제청으로 총회동의
□□□회	2년/연임	이사회결의선임후 총회 인준	2년/연임	회장 추천으로 총회 또는 이사회선임
○○○회	3년/연임	대의원총회선출	3년/연임	대의원총회선출

□ 법인대표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의 자의적 운영

- 법인설립이후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에서 임원선임 없이 대표가 총회 및 이사회이사록 허위 기재 등을 통하여 자의적으로 동 법인을 운영
 - ※ △△△부 소관 □□□회, ○○○부 소관 △△회
- 일부 회원에게만 총회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의사성립정족수 요건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총회개회 및 안건을 의결
 - ※ △△회는 05년 정회원 1,585명중(개회성립 정족수 793명) 878명에게만 총회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이중 480명(출석 151명, 위임 329명)만이 참석하여 의사성립 정족수에 미달하였음에도 안건의결(04년도 총회운영 의사성립정족수 미달)
- 회장이 제청하여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임원들이 대의원총회 구성상 당연직대의원이 되는 비율이 높아 회장에 의한 법인의 자의적인 운영가능성 존재
 - ※ △△회 : 총대의원수 133명 중 당연직대의원 75명(임원61명)과 선출직대의원 58명으로 선출직대의원비율이 전체 대의원수의 44%에 불과
- 총회시 협회회장이 수임자로 인쇄된 위임장을 회원들에 송부 후 미참석 회원들로부터 이를 제출받거나 수임자를 협회에서 직접 기재하여 의결권을 부당행사
 - ※ △△△부 소관 □□□회, ○○○부 소관 △△회

-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참석 이사들의 서명 없이 보관하여 이사들의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인운영의 투명성 저해
 - ※ △△△부 소관 □□회

□ 부적정 회원관리

- 회원자격 상실 및 연락두절 등으로 회원으로서 권리·의무를 행하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회원관리
 - ※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연락두절 등으로 회원으로서 권리·의무를 행하지 않는 회원들을 회원자격상실 조치 없이 회원으로 관리
(04년 회원 905개사중 159개사(17.5%), 05년 933개사중 221개사(23.6%))
 - ※ 벤처기업협회의 경우 05년 현재 관리회원중 372명이 벤처기업을 폐업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회원으로 관리